

KLRI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 2023년 제5호

# Global Legal Issue

## EU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현황 및 시사점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디지털 트레이드 포럼 위원장

**KLRI**  
**Global Legal Issue**

EU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현황 및 시사점



## CONTENTS

<b>I. 서론</b>	<b>17</b>
1. EU의 공급망 안정성 입법 추진 배경	17
2. EU의 공급망 안정성 관련 입법 및 정책 추진 동향	20
<b>II. EU 단일시장긴급조치(SMEI)규칙안 및 부수 입법안 주요 내용</b>	<b>24</b>
1. SMEI 규칙안의 목적, 규범 구조와 규율 대상 및 거버넌스	24
2. 단일시장 위기 대응 계획	28
3. 단일시장 경계	30
4. 단일시장 비상 상황	33
5. EU 및 회원국에 의한 조달	42
<b>III. 단일시장 비상 상황시 적합성 평가 및 공동 사양 채택 등에 관한 긴급 절차 규칙안 및 지침안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b>	<b>44</b>
1. 도입 배경	44
2. 긴급 절차 규칙안의 주요 내용	45
3. 긴급 절차 지침안의 주요 내용	46
<b>IV. EU 핵심원자재법(CRMA)안 주요 내용</b>	<b>48</b>
1. CRMA안의 목적, 규율 대상, 법안 구조 및 거버넌스	48
2. EU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	51
3. 리스크 모니터링 및 완화	56
4. 지속 가능성	59
5. 전략적 파트너십	63
6. 벌칙 등	64
<b>V. 평가와 전망 및 시사점</b>	<b>65</b>
1. EU SMEI규칙안 및 부수 입법안 관련	65
2. EU CRMA안 관련	71
<b>참고문헌</b>	<b>81</b>

---





요약

1. EU 단일시장긴급조치(Single Market Emergency Instrument: SMEI)규칙안 및 부수 입법안 관련

(1) 도입 배경 측면

- **(EU의 도입 배경 측면)** EU에는 일반적인 위기 관리를 규율하는 수평적인 위기 대응 메카니즘에 관한 여러 입법이 있었고, 단일시장의 특정 측면(상품의 수출 또는 공공 조달 등)의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 특정적인 조치들과 특정 부문(금융서비스, 의료, 식품 안전 제품 등)에서의 위기관리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 등도 갖고 있었음. 그러나 COVID-19 팬데믹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최근의 위기는, 예기치 않은 혼란이 발생할 경우 단일 시장과 그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냈음. 더욱이 미래에는 지정학적 불안정성, 기후 변화 및 그로 인한 자연재해 외에도 생물 다양성 손실과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또 다른 새로운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위기 대응 메카니즘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 대응 프레임워크의 수립이 필요하였고, 그 결과가 바로 SMEI규칙안이라 할 수 있음
- **(우리의 경우)** COVID-19 팬데믹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예기치 않은 사태로 인한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위기 상황은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니며, 우리는 특히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발생 가능성이 적지 않아 EU의 SMEI규칙안과 같은 공급망 위기 대응 프레임워크의 마련이 요구됨

(2) SMEI규칙안의 공급망 위기 대응 메카니즘의 특징

(i) 규율 대상 관련 현행 위기 대응 조치에 대한 보완적 성격

- 금번 SMEI규칙안에 명시된 조치는 위기가 단일시장 및 공급망의 기능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점에서 규율 대상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음. 다만, 동 규칙안은 각기 별도의 EU 규칙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반도체, 에너지 제품과 금융서비스 등 특정 측면이나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위기 대응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보완적 성격을 가짐

요약

(ii) 3단계 모드별 위기 대응조치 수립

- SME규칙안의 위기 대응 메카니즘은 첫째, 대응조치를 평시, 경계 및 비상 상황 등 3단계의 모드별로 구분하여 대응조치를 규정하고 있음이 주목됨. 여기서 (i) ‘위기’라 함은 EU 내부 또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성격과 규모의 예외적으로 예상하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자연적 또는 사람이 만든 사태를 가리키고, (ii) ‘경계’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에 중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향후 6개월 이내에 단일시장 비상 상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틀을 가리키며, (iii) ‘단일시장 비상 상황’이라 함은 단일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이나 단일시장의 필수적인 사회 또는 경제 활동의 유지에 불가결한 그러한 공급망의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그러한 위기가 단일시장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의미함

(iii) 의무적 조치, 비의무적 조치 및 혼합적 성격의 조치 등 다단계 대응 수단 규정

- 각 모드의 대응 과제별 구체적인 위기 대응조치를 살펴보면, (i) 투명성 제고 등 비규범적 조치와 (ii) 의무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규범적 조치 그리고 (ii) 양자의 중간적 내지 혼합적 성격을 가진 협력 조치 등 3가지 형태의 정책적 대응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바, 3단계별로 규정된 대응 수단을 그 성격에 따라 구분해 제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음

<표 1> EU SME규칙안에 따른 위기 모드의 대응 분야별 주요 대응 조치

위기 단계	대응 분야	위기 대응 조치
		(A형) 투명성 조치, (B형) 협력조치, (C형) 규범조치
평시 모드	거버넌스, 조정, 협력	(B형) 기술 수준의 포럼으로서 자문그룹 구성; 위기 예상 및 위기 상황 정보 공유
	위기대응 계획	(B형) 위기 프로토콜 관리; 훈련 및 시뮬레이션 (C형) 회원국은 공급망 기능에 중대하게 혼란을 초래하거나 중대하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태를 지체없이 통보할 의무
경계 모드	경계조치	(B형) 집행위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에 대한 전략 비축량을 구축하도록 회원국에 권고

요약

위기 단계	대응 분야	위기 대응 조치
		(A형) 투명성 조치, (B형) 협력조치, (C형) 규범조치
경계 모드	경계조치	(C형) 회원국은 경계 모드를 발동하는 이행법에서 확인된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망 정보수집 등 모니터링할 의무; 회원국은 전략 비축량이 목표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에 대한 전략 비축량을 구축할 의무; 집행위는 전략 비축 목표가 포함된 목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의무 등
	자유이동 복귀 및 촉진조치	(B형) 위기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역내 수출 금지나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기타 조치 도입 자제 등 (C형) 회원국은 해당 조치가 발효되기 전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 (근로자 및 서비스 제공자 포함)에게 상품, 서비스 및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비상 상황 모드	투명성 및 행정지원	(C형) 단일시장 비상 상황 동안 회원국은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서비스 공급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기 관련 조치를 이유와 함께 집행위에 통보할 의무
	위기 관련 상품의 특정 정보 요청 및 가용성 확보 조치	(A형) 경제사업자에게 위기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권고 (B형) 심각한 위기 관련 (공급)부족이나 이의 즉각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위기 관련 공급망의 대표단체나 경제사업자들로 하여금 (i) 관련 공급망 혼란에 대한 정보를 주어진 기한 내에 집행위원회에 전달하거나 (ii) EU 내 생산 시설과 상기 대표단체나 경제사업자가 운영하거나, 계약하거나 또는 공급을 구매하는 제3국 시설에서의 위기 관련 상품 및 그 부품의 생산능력과 가능한 기존 재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전달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국이 조성한 전략적 비축량이 단일시장 비상 상황과 관련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전략비축물자를 분배하도록 회원국에 권고할 수 있음</li> <li>■ 집행위는 의무 정보 요청 응답 의무나 우선처리 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자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li> </ul> (C형) 회원국은 이전에 비축한 물자를 방출하고, 허가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사업자는 위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 역량을 확대하며, 위기 관련 상품의 주문을 우선 처리할 의무</li> </ul>

요약

위기 단계	대응 분야	위기 대응 조치
		(A형) 투명성 조치, (B형) 협력조치, (C형) 규범조치
비상 상황 모드	위기 관련 상품의 적합성 평가 절차 예외 조치	(B형) 비상 상황에서 지정된 위기 관련 상품의 시장 출시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적합성 평가 절차를 완화하여 긴급 절차를 적용하고, 적합성 평가를 우선 처리하며, 통고기관의 의무적 관여를 요구하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수가 면제될 수 있고, 적합성 추정을 부여하는 공동 사양(common specifications)을 채택할 수 있음
	조달	(B형) 비상 상황 모드 기간중 회원국을 대신한 집행위원회의 전략적 중요 상품 및 서비스와 위기 관련 상품의 조달(회원국의 자산을 대신한 집행위원회에의 상품 및 서비스의 조달 요청 등) ■ 비상 상황 모드 기간중 공동 조달

출처: European Commission, COM(2022) 459 final, 2022/0278(COD), Brussels, 2022. 9. 19., 11-12쪽 (박스자료)를 기초로 필자 재정리

(iv)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대응

- 비상 상황시 취하는 위기 관련 상품의 특정 정보 요청 및 가용성 확보 조치의 경우 먼저 자발적인 정보 제공이나 우선 주문 처리를 요청하지만, 사업자가 그러한 고의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한내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주문을 우선 처리하기로 수락한 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대응을 도입하고 있음

(3) 전망

- 집행위원회의 SMEI규칙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와의 3자간 협의를 거쳐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서의 표결을 통해 채택되면, 이후 EU 관보에 게재되고 발효하게 됨
- **(EU 의회 입장)** 2023년 3월에 제시된 EU 의회의 고용사회분과위원회가 작성한 집행위원회의 SMEI규칙안에 대한 개정 의견안에 따르면, SMEI규칙안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해 파업권과 같은 회원국 및 EU 차원에서 인정된 기본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닐 것 과 교섭권이나 집단계약을 체결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개정안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이 SMEI규칙안에 따른 긴급조치로 인한 노동자 권리에 대한 제약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들이어서 통과에 달리 어려움은 없어 보임

## 요약

- **(이사회 및 회원국 등의 의견)** 이에 대해 EU 회원국 장관들은 SMEI 초안이 발표되자 동 초안이 집행위원회에게 핵심 공급망의 모니터링과 회원국에 대한 전략적 비축 설정 그리고 비상 상황시 경제사업자에게 우선 처리 주문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권한을 부여 한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긴급조치 권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조건과 제한을 요구하였음
- **(이사회 및 회원국 등의 의견)**
  - 에스토니아 기업 및 정보 기술 장관은 “우리는 기업들에게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제출 하도록 추가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이는 단지 우리의 경쟁력과 위기에 대처할 우리의 역량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등 일부 회원국은 SMEI규칙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출하였음
  - 또한 EU 이사회는 2023.1월 중요 제품의 비축 명령권 등 일부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동 규칙안의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하였음. EU 이사회 법률자문기구인 EU 법제실(EU Council's Legal Services, CLS)도 2023.4월에 SMEI규칙안 가운데 각 회원국에 대한 전략적 비축 의무 부과, 경제사업자에 대한 위기대응 물품 재고와 생산 역량 등에 관한 정보 제출 요구 및 특정 물품의 우선 주문 처리[생산] 요구 등은 EU법에 기한 집행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EU법에 위반된다는 법률 의견을 발표하였음
- **(집행위원회의 반론)** Thierry Breton 집행위 위원은 집행위원회 제안이 일본, 한국이나 미국과 같은 국가들에 비해 훨씬 개입이 적은 것임을 지적하면서 SMEI규칙안의 비상 상황 모드는 집행위원회가 아닌 이사회에 의해서만 발동될 수 있음을 환기하였음
- 따라서 집행위원회가 공표한 SMEI규칙안은 EU 의회와 이사회와의 3자 협의 과정에서 집행위원회의 긴급조치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고, SMEI규칙안에 따른 긴급조치 권한을 상당 부분 완화하는 개정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4) 평가 및 제언

- SMEI규칙안의 공급망 위기 대응 메카니즘에서는 상황을 평시, 경계 및 비상 상황으로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대응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우 적절한 대응체계라 평가되고, 따라서 향후 우리의 공급망 안정화 입법에서도 3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입안하는 것이

## 요약

적절해 보임. 더불어 SMEI규칙안의 3단계별 제안된 대응조치는 전반적으로 적절해 보이거나, EU의 단일시장 특성을 반영하는 자유이동에 관한 조치 등은 우리에게서 불필요한 것으로 보임

- 금번 SMEI규칙안의 대응조치 가운데 향후 우리의 유사 입법시 논란 가능성이 있는 조치로는 비상 상황시의 사업자에 대한 정보 요청과 우선 처리 명령이 될 것임. 두가지 조치 모두 비상대응조치로서 필요하고 유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우리의 입법에서는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정보 제공 요구 등이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SMEI규칙안에서는 공급망 위기 대응조치의 하나로서 통일(규격)제품입법의 특정 개정을 규정하고 있음이 주목되는바, 이는 공급망 위기 대응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적합성평가 절차의 적용에 있어 우선 처리 대우, 적합성 평가 절차에서 통고기관의 의무적 관여 면제, 국가 및 국제표준에 기한 적합성 추정 등 시험인증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적용 예외 근거를 도입하고 있음이 매우 주목됨. 이는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제약적 상황에 비추어 우리 역시 유사한 예외 규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2. EU CRMA안 관련

### (1) 핵심 원자재의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한 대응 필요

- **(EU의 도입 배경 측면)** EU는 마그네슘, 니켈 등 많은 핵심 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를 중국 등 소수의 제3국에 의존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핵심 원자재는 재생 에너지, 디지털 산업, 우주 및 방위 부문을 포함한 광범위한 전략적 부문에 필수적인 투입물이어서 이러한 핵심 원자재의 특정 제3국에의 높은 공급 의존도는 위기시 그 수급에 있어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 실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촉발된 가스 공급 차단으로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었음. 이러한 배경에서 핵심 원자재 전반에 걸쳐 공급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CRMA안을 공표하게 되었음

## 요약

- **(우리의 사정)** 국내 핵심원자재는 전반적으로 특정국 편중도가 높으며 취약성이 높은 품목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한 경제안보 환경하에서 한중 관계가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국내 주요 수입품목인 리튬, 코발트, 망간의 경우 對 중국 의존도가 높는데 대체 후보국이 없어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우리의 경우 핵심 원자재의 공급안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 도입이 긴요한 상황이라 보아야 할 것임

## (2) 대상 원자재의 범위 및 선정

- 다음으로 공급망 안정화 법안의 대상 핵심 원자재의 범위는 무엇이며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됨. 이와 관련 CRMA안에서는 (i) 평가된 원자재 중에서 전략적 중요성, 예상 수요 증가율 및 생산 증가 난이도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원자재를 가리키는 “전략 원자재(strategic raw materials)”와 (ii)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 위험에 대한 기준치(threshold)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는 기타 원자재를 가리키는 “핵심 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의 두 개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규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집행위원회가 법안 발효 후 4년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매 4년마다 전략 원자재 및 핵심 원자재의 리스트를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있음
- 공급망 안정성 확보 대상 원자재를 (i) 전략적 중요성과 (ii) 경제적 중요성 및 공급 위험의 두가지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되는바, 그 이유는 전자의 경우 첨단산업 원자재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필요하고, 후자는 범용재라 할지라도 그 수급이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원자재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준이기 때문임. 또한 CRMA안에서는 대상 원자재의 공급망 안정성을 위한 대응조치의 내용에 따라 그 적용 대상을 전략 원자재와 핵심 원자재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기도 함. 가령, 핵심 원자재에 대해서는 공급 위험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전략 원자재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이 그러함

〈표 2〉 CRMA안에 따른 2023년 핵심 원자재와 전략 원자재 목록 개요

구분	대상 주요 원자재
<b>핵심 원자재:</b> 경제적 중요도가 높고 공급위험도가 임계값에 가깝거나 초과한 원자재	안티모니, 보크사이트, 중정석, 베릴륨, 비스무트, 붕소, 코발트, 점결탄, 형석, 갈륨, 게르마늄, 하프늄, 중희토류, 경희토류, 리튬, 마그네슘, 천연흑연, 니오븀, 인, 백금족, 스칸듐, 금속규소, 스트론튬, 티타늄, 텅스텐, 바나듐, 비소, 헬륨, 망간, 장석, 구리, 니켈(배터리 등급)* 등 총 34개  * 기존 2020년 핵심원자재 목록에서 6개 원자재가 신규 추가되고 인듐, 천연고무는 제외됨. 신규 추가 원자재 중 구리와 니켈은 공급 위험도는 낮으나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전략원자재로 선정되며 핵심원자재에 포함
<b>전략 원자재:</b> 전략적 중요도가 높고, 미래 수요와 글로벌 공급 간 격차가 크며 생산량 증가 난이도가 큰 원자재	비스무트, 붕소(금속급), 코발트, 구리, 갈륨, 게르마늄, 리튬(배터리 등급), 마그네슘메탈, 망간(배터리 등급), 천연흑연(배터리 등급), 니켈(배터리 등급), 백금족, 영구자석용 희토류(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테르븀, 디스프로슘, 가돌리늄, 사마륨, 세륨), 금속규소, 티타늄, 텅스텐 등 총 16개

출처: 윤웅희, EU의 핵심원자재법 살펴보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23. 4. 6.자.

- 생각건대, 전략 원자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속적 대응이 필요에 보임에 비해 핵심 원자재는 시기 및 상황에 따라 대응 필요가 가변적일 수 있는 성격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우리의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에서도 CRMA안에서와 같이 전략 원자재와 핵심 원자재의 개념을 구분하여 도입하고, 그 대응조치에 있어 양자간 성격을 반영한 필요가 있어 보이며, 양자 모두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대상 리스트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응 메커니즘

-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CRMA안에 따른 대응 메커니즘은 크게 (i) 리스크 모니터링, (ii)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 (iii)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및 (iv) 핵심 원자재의 순환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i) 리스크 모니터링

-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 위험 모니터링)** CRMA안에서는 집행위원회가 핵심 원자재와



관련된 공급 위험을 모니터링하도록 하며, 모니터링은 최소한 (a) 무역 흐름, (b) 수요 및 공급, (c) 공급 집중도, (d) 가치사슬의 여러 단계에서의 EU 자체와 글로벌 생산 및 생산능력 지표의 변화를 포함하도록 규정함

- **(전략 원자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각 전략 원자재의 EU 공급망 취약성을 공급 중단을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별 영향과 그 잠재적 영향을 추정하여 공급 중단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최소 3년마다 수행하도록 규정함
- **(모니터링을 위한 회원국의 정보 제공 의무)**
- **(전략적 재고 보고)** 회원국은 전략 원자재와 필요시 핵심 원자재의 전략적 재고 (Strategic stocks) 상태에 대한 정보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전략적 재고의 안전 수준 기준 채택 및 조정)** 전략 원자재의 EU 재고의 안전한 수준을 나타내는 기준(benchmark)을 채택하고, 각 회원국 내 경제사업자의 전략 원자재 소비 등을 고려하여 전략 재고 수준을 조정함
- **(기업의 리스크 대비를 위한 전략 원자재 공급망 지도 제작과 공급망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회원국은 자국 영토에서 전략 원자재를 사용하여 '전략 기술'을 제조하는 대기업을 확인하고, 확인된 대기업을 2년마다 (a) 사용하는 전략 원자재가 어디에서 추출, 가공 또는 재활용되는지에 대한 지도 제작과 (b) 공급 중단을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별 영향과 그 잠재적 영향을 추정하여 공급 중단에 대한 취약성을 평가하는 전략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포함한 공급망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 **(평가 및 제언)** 공급망 위험 원자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응에 있어 대상 원자재별로 국내 최종 수요처와 수요량 등을 포함한 물자 흐름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이 점에서 CRMA안에서 규정한 핵심 원자재의 공급 위험 모니터링과 전략 원자재의 스트레스 테스트의 주기별 시행은 우리의 공급망 안정화 법안에서도 반드시 필요할 것임. 이를 기초로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핵심 원자재의 전략적 재고의 안전 수준 기준을 설정하여 일정한 전략적 재고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 차원에서도 대상 원자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의 사전적 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요약

## (ii)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

- **(전략 프로젝트 인정 및 실행)** CRMA안에서는 집행위원회가 EU의 전략 원자재 공급의 안보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과 프로젝트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 등을 충족하는 원자재 프로젝트를 ‘전략 프로젝트’로 인정하고 회원국은 동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실행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전략 프로젝트를 위한 허가 절차는 가장 신속히 처리하고 환경영향 평가도 30일 안에 처리하도록 규정함
- **(전략 프로젝트 촉진을 위한 자금조달 조정 및 장기구매계약 실시 등)** 전략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추진자의 요청에 따라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 조언하며, 장기구매계약(Off-take agreement)의 체결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할 뿐 직접적인 자금조달규칙이나 재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평가 및 제언)** 핵심 또는 전략 원자재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수요국이 해당 원자재의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것임. 따라서 우리의 공급망 안정화법에서도 CRMA안을 참조하여 핵심 원자재 등의 자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도입을 강구해야 할 것임. 이와 관련 핵심 원자재의 가공난이도, 재고관리 주기, 운송방식, 환경 부담 등 특성에 따른 다양한 지원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iii)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CRMA안에서는 유럽핵심원자재이사회로 하여금 EU의 공급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3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 우리의 경우 핵심 광물의 자급률이 극히 취약할 뿐만 아니라 그 수입원의 대부분이 특정국에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 따라서 우리의 경우 특히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주요 원자재와 관련한 정보 공유와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 Security Partnership)”, “유럽원자재 동맹(European Raw Materials Alliance)” 또는 “EU-미-일 3각 핵심원자재회의 (Trilateral EU-US-Japan Conference on Critical Materials)” 등과 같은 원자재 국제 협력체계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 (iv) 핵심 원자재의 순환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 **(핵심 원자재의 순환성 제고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 채택 및 이행)** CRMA안에서는 각 회원국이 동 규칙 발효일로부터 3년 후까지 (a) 핵심 원자재 회수 가능성이 높은 폐기물의 수거를 늘리고 적절한 재활용 시스템에 도입되도록 보장할 것, (b) 핵심 원자재 회수 잠재력이 높은 제품 및 구성품의 재사용을 늘릴 것, (c) 제조에 있어 2차 핵심 원자재 사용을 늘릴 것, (d) 재료 효율성 및 응용 분야에서 핵심 원자재 대체를 촉진할 것, (e) 회원국 인력이 핵심 원자재 가치사슬의 순환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도록 보장할 것 등의 조치를 포함하는 국가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함
- **(추출 폐기물 회수 관련 사업자의 의무)** 폐기물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추출 폐기물 등으로부터 핵심 원자재의 잠재적 회수에 관한 예비 경제성 평가서 (preliminary economic assessment study)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함
- **(영구자석의 재활용 제고 관련 제조업체 의무)** 영구자석이 포함된 제품 제조업자는 해당 자석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포함된 경우 당해 자석의 물질 유형에 대한 라벨을 부착할 것과 영구자석에 관한 라벨을 부착해야 하고, 일정 기준 영구자석 포함 제품의 경우 소비후 폐기물로부터의 회수된 물질의 비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영구자석의 재활용을 제고할 의무 등을 규정함
- **(인정제도)** 핵심 원자재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인증 제도를 개발하고 감독하는 회원국 정부나 단체는 자신들의 제도가 집행위원회에 의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음
- **(환경발자국 선언)** 핵심 원자재를 시장에 출시할 때 가장 중요한 영향 범주에 대한 당해 원자재의 환경발자국을 선언할 의무가 필요한 경우, 당해 특정 핵심 원자재에 대한 산정 및 검증 규칙을 채택할 수 있음
- **(평가 및 제언)** CRMA안에서는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핵심 원자재의 순환성 및 재활용성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채택 및 시행과 더불어 관련 제조업체에게 추출 폐기물의 회수 및 영구 자석 재활용 등을 통해 관련 핵심 원자재의 수급을 지원함으로써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제고할 수 있는 점에서 주목됨. 더불어 관련 제조업체에 대해 환경발자국 선언 의무의 부과 등을 통해 보다 낮은 환경발자국을 가진 핵심 원자재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기후 및 환경 목표에도 기여하는 대응조치를 도입하고 있음은 높이 평가됨. 따라서 향후 우리의 공급망 안정화법에서도

대상 원자재의 순환성과 재활용성을 위한 조치 그리고 환경발자국 선언 등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에도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조치 도입을 검토할 가치가 있어 보임

#### (4) 전망 및 대응

- **(전망)** EU 집행위원회가 공표한 CRMA안은 향후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및 이사회 간 3자 협의를 거쳐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의 표결을 통해 확정, 시행되는바, 그 과정에서 일부 개정이 이뤄질 수 있겠지만, SMEI규칙안과 달리 CRMA안에 대해서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로부터의 아직까지 알려진 중요한 이견은 없음
- **(우리 정부의 대응)** 중소기업의 경우 공급망 감사를 수행할 역량은 물론 공급망 위기에 노출시 대응 역량 역시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따라서 핵심 원자재 및 전략 원자재를 사용하는 제조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공급망 전 과정에 걸쳐 규모별로 피해 예상 범위를 산정하고 위험비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 기업의 대응)** CRMA안에는 제조업자에게 영구자석 라벨 부착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어 우리 기업은 생산하는 제품 내지 원자재가 동 규칙의 적용을 받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각 회원국의 핵심 원자재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도입되는 인증 제도를 숙지하여 대응해야 할 것임. 이밖에 후속 입법과정에서 원산지 요건의 강화나 EU 공급망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과 같은 다른 법안과 연계하여 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

# I 서론

## 1. (1) EU 단일시장긴급조치(SMEI)규칙안의 도입 배경

### EU의 공급망 안정성 입법 추진 배경

- 2022년 9월 19일,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Commission)는 'EU 단일시장긴급조치(Single Market Emergency Instrument, SMEI) 규칙안'이라고도 불리우는 'SMEI규칙안'<sup>1)</sup>을 채택하였는데 해당 규칙안의 채택 배경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EU의 단일시장은 지난 30년 동안 특히 어려운 시기에 있어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서비스 및 상품에 대한 접근을 위한 공급망이 작동함에 있어 중추 역할을 했음.<sup>2)</sup> 그런데 COVID-19 팬데믹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최근의 위기는, 예기치 않은 혼란이 발생할 경우 단일시장과 그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냈고 동시에 유럽 경제와 모든 이해관계자가 잘 작동하는 단일시장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음. 미래에는 지정학적 불안정성, 기후 변화 및 그로 인한 자연재해 외에도 생물 다양성 손실과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또 다른 새로운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단일시장의 기능은 비상시에도 보장될 필요가 있음<sup>3)</sup>
  - 위기가 단일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한편으로는 위기로 인해 단일시장 내 자유로운 이동에 장애물이 발생함으로 인해 단일시장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위기는 위기 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부족을 증폭시킬 수 있음. 단일시장이 파편화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공급망이 순식간에 단절될 수 있으며, 기업은 상품과 서비스의 소싱, 공급,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1) European Commission, COM(2022) 459 final. 2022/0278(COD), Brussels, 2022. 9. 19.

2) European Commission,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 Experts workshop on the Single Market Emergency Instrument, 2023. 2. 10.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events/experts-workshop-single-market-emergency-instrument-2023-02-10\\_en](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events/experts-workshop-single-market-emergency-instrument-2023-02-10_en).

3) European Commission, 전계 자료(각주 1), 1쪽.

주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접근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정보 부족 및 법적 명확성 결여는 이러한 차질로 인한 영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이러한 위기로 인한 직접적인 사회적 위험에 덧붙여 시민, 특히 취약 계층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직면하게 됨. 따라서 SMEI규칙안은 별개이나 상호 연관된 다음의 두 가지 문제 즉, (i) 위기 시 상품, 서비스 및 인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ii) 위기 관련 재화 및 서비스의 부족에 대처하는 것이 그 근본 취지임<sup>4)</sup>

## (2) EU 핵심원자재법(CRMA)안의 도입 배경

-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3월 16일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안<sup>5)</sup>을 공표하였음
- 여기서 EU가 CRMA안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함. 원자재(raw materials)는 모든 산업 가치사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데, EU 경제에 중요한 비에너지(non-energy), 비농업 원자재(non-agricultural raw materials)의 공급은 높은 수준의 공급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러한 핵심 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 CRM)는 종종 재생 에너지, 디지털 산업, 우주 및 방위 부문, 보건 부문을 포함한 광범위한 전략적 부문에 필수적인 투입물임. 동시에 CRM의 추출과 가공은 사용되는 방법과 프로세스에 따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도 미칠 수 있음<sup>6)</sup>
- EU는 많은 주요 원자재를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이러한 수입은 추출 및 가공 단계 모두에서 소수의 제3국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EU는 마그네슘의 97%를 중국에서 구매하고, 영구자석에 사용되는 중희토류 원소는 중국에서 독점적으로 정제됨. 배터리에 사용되는 전 세계 코발트의 63%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채굴되고, 60%는 중국에서 정제되고 있음. 이러한 집중도는 EU를 심각한 공급 위험에 노출시킴. 실제로 구매 국가들에 대해 수출 제한 등을 통해 CRM 공급자로서의 강력한 지위를 레버리지로서 이용하는 일부 국가들의 선례가 나타남<sup>7)</sup>

4) 상계 자료, 1쪽.

5) European Commission, COM(2023) 160 final, 2023/0079(COD), Brussels, 2023. 3. 16..

6) 상계 자료, 1쪽.

7) 상계 자료, 1쪽.

- 재생 에너지로의 전 세계적 전환과 경제 및 사회의 디지털화로 인해 이러한 중요한 원자재에 대한 수요는 향후 수십 년 동안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가령, 모빌리티 및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리튬에 대한 전 세계 수요는 2050년까지 최대 89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풍력 터빈이나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영구자석 제조의 원료가 되는 희토류 원소에 대한 EU의 수요는 2050년까지 6~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갈륨에 대한 EU 수요는 2050년까지 1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소재를 대체하고 소재 효율성과 순환성을 높이면 예상되는 수요 증가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로도 추세를 되돌릴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현재의 계획된 생산능력은 예상 수요의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 또한 코발트 및 희토류에 대한 향후 수요 증가가 생산능력 증가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배경에서 많은 국가들이 주요 원자재의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하여 자원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sup>8)</sup>
- 실제로 COVID-19 위기로 인한 생필품 공급 혼란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는 EU의 구조적인 공급 의존성과 이것이 위기시 잠재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부각하였음. 또한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과 국방 및 우주 응용 분야에서 핵심 원자재의 중요성은 이의 공급 혼란이 EU 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단일시장의 기능을 위태롭게 하고 EU의 경쟁력을 훼손하며, 일자리와 고용 창출을 위태롭게 하고, 근로 조건과 임금에 영향을 미침. 덧붙여 핵심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EU는 친환경적이고 디지털화된 미래를 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임<sup>9)</sup>
- 하지만 비규제 조치만으로는 EU가 핵심 원자재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에의 접근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아님. 무엇보다 현재 핵심 원자재 전반에 걸쳐 공급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부재함. 구체적으로 EU 차원에서 핵심 원자재의 공급과 관련하여 (i) 경제사업자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하고 복원력을 갖도록 보장하는 공동의 프레임워크가 부재하여 산업계는 공급 혼란(Supply disruptions)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ii) EU의 핵심 원자재의 추출, 처리 또는 재활용 잠재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핵심 원자재 프로젝트 개발에 있어 자금조달의 어려움이나 길고 복잡한 허가 절차, 잠재적인 환경 문제 등이 주요 장애물로

8) 상계 자료.

9) 상계 자료.

작용하고 있음. (iii) 폐기물 관리에 관한 입법은 핵심 원자재의 순환성을 개선하기 위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iv) 핵심 원자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고하고 제한하는 것에 따른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아니함<sup>10)</sup>

## 2. EU의 공급망 안정성 관련 입법 및 정책 추진 동향

### (1) EU 단일시장긴급조치(SMEI)규칙안 관련 입법 추진 동향

- EU는 일반적인 위기 관리를 규율하는 수평적인 위기 대응 메커니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여러 입법을 갖고 있음. 이러한 수평적 위기 대응 메커니즘은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나 수출 또는 공공 조달에 관한 공동 규칙과 같은 단일시장의 특정 측면의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 다른 보다 특정적인 조치들에 의해 보완됨. 또한 위기관리의 특정 측면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가령, 금융서비스,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기타 의료 대책, 식품 안전 제품과 같이 특정 부문에서의 위기관리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법으로 간주됨. 이러한 EU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음

<표 3> EU의 위기 대응 메커니즘의 유형별 조치 개요

유형 구분	해당 메커니즘 및 조치	핵심 내용 및 운영 사례
수평적 위기 대응 메커니즘	통합 정치위기 대응 메커니즘 <sup>11)</sup>	복잡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 간의 정보 공유와 정치적 조정을 촉진 (운영 사례) 사이버 공격, 자연재해 또는 복합 위협으로 인한 주요 위기에 대한 연합의 대응을 운영; COVID-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침략 사태 대응
수평적 위기 대응 메커니즘	EU 시민보호 메커니즘과 동 긴급대응조정센터 <sup>12)</sup>	1차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한 EU 집행위원회의 중앙 운영 허브로서 EU 차원의 전략적 비축물자 구축("rescEU"), 재난 위험 평가, 시나리오 구축, 재난 복원력 목표, 자연 및 인공 재난 위험에 대한 EU 차원의 관리, 훈련 및 연습과 같은 기타 예방 및 대비 조치 수행

10) 상계 자료, 2쪽.

11) Council Implementing Decision (EU) 2018/1993 of 11 December 2018 on the EU Integrated Political Crisis Response, on the basis of previously existing arrangements.

12) Decision (EU) 1313/2013 governing the functioning of the Union Civil Protection Mechanism.



유형 구분	해당 메커니즘 및 조치	핵심 내용 및 운영 사례
특정 분야의 위기 대응조치	규칙(EC) 제2679/98호 <sup>13)</sup>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회원국의 책임으로 인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장애 대처를 위한 대응 메커니즘; 회원국과 집행위원회 간의 정보 교환 시스템 뿐만 아니라 통지 메커니즘을 규정
	규칙(EU) 제2015/479호 <sup>14)</sup>	집행위원회가 특정 범주의 제품에 대해 EU 역외 수출 감시나 EU 역외 수출에 대한 제품 범주를 승인하도록 허용 (운영 사례) 특정 백신과 백신 제조에 사용되는 활성 물질을 수출 감시 대상으로 지정
	규칙(EU) 제2021/2071호 <sup>15)</sup>	회원국을 대신하여 집행위원회에 의한 공동 조달 규정
특정 부문 위기 대응조치	"식량 공급 및 식량 안보 보장을 위한 비상 계획"에 관한 집행위원회 연락문 <sup>16)</sup>	COVID-19 팬데믹과 이전 위기에서 얻은 교훈을 경험으로 대비를 포함한 조정 및 위기 관리 강화를 목표로 도입함. 이를 위해 비상 계획은 향후 위기 발생시 식량 공급과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따라야 할 주요 원칙을 제시하고, 비상 계획과 그 주요 원칙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조정을 강화하고 데이터 및 관행을 교환하기 위해 집행위원회가 의장을 맡고 회원국 및 비EU 국가 대표와 식품 공급망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유럽 식량 안보 위기 대비 및 대응 메커니즘(European Food Security Crisis preparedness and response Mechanism: EFSCM)을 설립
	"운송 비상 계획"에 관한 집행위원회 연락문 <sup>17)</sup>	운송 부문의 위기 대비 및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동 계획은 위기 발생 시 운송 부문, 승객 및 내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10가지 조치로 구성된 도구 상자를 포함하는 "위기 매뉴얼"을 수립함. 여기에는 EU 운송법을 위기 상황에 적합하게 만드는 조치, 운송 부문에 대한 적절한 지원 보장, 상품, 서비스 및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운송 정보 공유, 실제 상황에서의 운송 비상 사태 테스트 등이 포함

13) European Communities, OJ L 337, 1998. 12. 12., 8쪽.

14) Regulation (EU) 2015/4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2015.

15)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1/2071 of 25 November 2021.

16) European Commission, COM(2021) 689 final, Brussels, 2021. 11. 12.

17) European Commission, COM(2022)2011 final, Brussels, 2022. 5. 23.

유형 구분	해당 메카니즘 및 조치	핵심 내용 및 운영 사례
특정 부문 위기 대응조치	규칙(EU) 제2022/123호 <sup>18)</sup>	특정 '공중보건 비상 상황' 또는 '대규모 사태'를 해결하는데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중앙 및 국가 승인 인체용 의약품의 잠재적 및 실제 부족을 모니터링하고 완화하기 위한 프레임 워크를 제공

출처: 집필자 작성

- 한편,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는 2020년 10월 “Update of the Industrial Strategy Communication”<sup>19)</sup>에서 EU가 COVID-19 팬데믹으로부터의 교훈을 통해 비상 상황에 직면한 단일시장의 약점을 해결할 것을 언명함. 이후 2022년 EU 집행위원회(Commission)는 SMEI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하였고,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의 계획을 환영하면서 SMEI를 법적 구속력 있는 구조적 조치로서 개발할 것을 촉구하였음.<sup>20)</sup> 이에 따른 후속 작업 결과 집행위원회는 2022년 9월 19일 ‘SMEI규칙안’을 채택하였음

## (2) EU 핵심원자재법(CRMA)안 관련 정책 동향

- EU에서의 원자재 공급망 안정을 위한 논의는 2008년 ‘원자재 이니셔티브(Raw Materials Initiative, RMI)’에서 비롯됨. 당시 일본과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특정 원자재에 대한 자신들의 높은 의존도를 인식하여 자신들의 원자재 공급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음. 가령, 미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원자재를 정의하고, 방위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 비축량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해 EU의 경우 일부 회원국들이 특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EU 차원에서 공정하고 왜곡되지 않은 가격으로 원자재에 대한 충분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인 정책 대응이 없었음.<sup>21)</sup> 이에 EU가 통합 원자재 전략에 합의할 것을 제안한 것임. 이후 EU는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일련의 정책을 도입하였는바,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음

18) European Union, OJ L 20, 2022. 1. 31., 1쪽.

19) European Commission, COM(2021) 350 final, Brussels, 2021. 5. 5.

20)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7 February 2022 on tackling non-tariff and non-tax barriers in the single market (2021/2043(INI).

21)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COM(2007) 699 final, Brussels, 2008. 11. 4., 5쪽.

〈표 4〉 EU의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 개요

관련 정책	핵심 내용
2008년 '원자재 이니셔티브(Raw Materials Initiative)'	이는 EU에서의 성장과 일자리에 대한 중대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i) 세계시장에서 왜곡되지 않은 조건으로 원자재에의 접근 보장, (ii) 유럽산 원자재의 지속가능한 공급 촉진, (iii) EU의 1차 원자재 소비 감소 등 3가지 정책 필러로 구성되어 있음 <sup>22)</sup>
2013년 '유럽 원자재 혁신 파트너십(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EIP) on Raw Materials) <sup>23)</sup>	EIP는 원자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방식에 대해 유럽위원회, EU 국가 및 민간 주체에게 높은 수준의 지침(guidance)을 제공하기 위해 입안된 이해관계자 플랫폼으로서 EU의 원자재 정책 프레임워크에 있어 중심 역할을 수행함
2015년 '원자재 정보 시스템(Raw Materials Information System, RMIS)'	RMIS는 1차 및 2차 공급원으로부터의 비연료, 비농업 원자재(non-fuel, non-agricultural raw materials)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참조 웹 기반 지식 플랫폼으로서 그 목표는 (i) 특정 EU 원자재 정책과 EC 서비스에 필요한 지식의 가용성, 일관성 및 품질을 제고하고, (ii) 유럽 안팎의 지식 기반에서 주요 원자재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고하는 것임
2020년 '핵심원자재 복원력(Critical Raw Materials Resilience)'에 관한 집행위원회 연락문	동 연락문은 EU의 원자재 이니셔티브(RMI)를 기초로 (i) EU 2020 핵심 원자재 목록과 (ii) 핵심 원자재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을 위한 과제와 EU의 복원력을 높이고 전략적 자율성을 개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제시

출처: 다음 문헌<sup>24)25)</sup>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상술한 일련의 (핵심)원자재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기초로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3월 16일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안을 공표하였음

22) 상계 자료, 6-10쪽.

23)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EIP) on raw materials,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ectors/raw-materials/eip\\_en](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ectors/raw-materials/eip_en).

24) European Commission, RMIS, <https://rmis.jrc.ec.europa.eu/about>.

25)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COM(2020) 474 final, Brussels, 2020. 9. 3.

## II EU 단일시장긴급조치(SMEI)규칙안 및 부수 입법안 주요 내용

### 1. (1) SMEI의 목적

#### SMEI 규칙안의 목적, 규범 구조와 규율 대상 및 거버넌스

- **(일반 목적)** SMEI의 일반적인 목적은 위기 시 단일시장의 경계, 대응 및 원활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이를 위해 SMEI는 단일시장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미래의 위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잘 조정된 위기 대응 장치를 EU에 제공하고, 더 나은 조정, 투명성 및 신속성을 통해 기존의 다른 EU 메커니즘을 보완하고자 함. 그 목적은 단일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위기 시 상품, 서비스 및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공급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임<sup>26)</sup>
- **(구체적 목적 1: 위기 상황에서 상품, 서비스 및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장애를 최소화 하는 것)** 이는 SMEI의 보다 구체적인 두가지 목적 중 하나로서 단일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에 대한 EU 차원의 경계와 대응을 잘 조율할 수 있는 해결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위기 시 상품, 서비스 및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장애를 최소화하는 것임. 이를 위해 경계, 조정 및 투명성 조치로 구성된 해결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장애에 직면하여 보다 조율되고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한 회원국의 대응을 보장하고 필요한 투명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sup>27)</sup>
- **(구체적 목적 2: 단일시장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위기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부족에 대처하고, 그 가용성을 보전하는 것)** 이는 위기 상황에서 공급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단일시장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비상시 위기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가용성을 보장할

26) 전계 자료(각주1), 58쪽.

27) European Commission, COM(2022) 459 final, Brussels, 2022. 9. 19., 58쪽.

목적으로<sup>28)</sup> 위기 관련 공급망 병목 현상과 설비 필요를 파악하는데 정보 교환과 업계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한 정책 대응과 모든 단일시장 참가자들에게 적절한 경계, 조정 및 투명성 메커니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sup>29)</sup>

(2) SEMI규칙안의 규범 구조

- SMEI규칙안은 총 6부 4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Part)에 따라서는 편(Title) 및/또는 장(Chapter)으로 편제되어 있는데 그 핵심은 평시와 위기상황의 구분에 있음
  - **(평시)** 동 규칙안은 평시에 있어 단일 위기대응 계획에 대한 규정(제2부)을 두고 있음
  - **(위기 상황)** 다음으로 위기 상황에 있어서는 (i) 단일시장 경계 모드(Single Market vigilance mode)의 발동 기준 및 이에 따른 경계조치에 대한 규정(제3부)과 (ii) 단일시장 비상상황 모드(Single Market emergency mode)의 발동 기준과 동 기간 중 자유이동 제한 및 비상 대응조치에 대한 규정(제4부)등 두 단계로 내용이 구분되어 있음. 이 밖에 동 규칙안은 위기 상황에서의 EU 및 회원국에 의한 조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규칙안의 주요 규율 대상별 구성 조문의 내용은 아래의 <표 5>와 같음

<표 5> SMEI규칙안의 편제 및 구성 주요 조문

편제: 부, 편 및 장		구성 주요 조문
제1부 일반규정	제1편 범위	규율 대상(제1조), 적용 범위(제2조), 정의(제3조)
	제2편 거버넌스	자문그룹(제4조), 중앙연락사무소(제5조)
제2부 단일시장 위기대응 계획		위기 프로토콜(제6조), 훈련 및 시뮬레이션(제7조), 조기경고용 임시 경보(제8조)
제3부 단일시장 경계	제1편 경계 모드	발동(제9조), 연장 및 발동 해제(제10조)
	제2편 경계조치	모니터링(제11조), 전략적 비축(제12조)

28) SMEI규칙안 제1조제1항. 참고로 원문은 "---- with the purpose of safeguarding the free movement of goods, services and persons and of ensuring the availability of goods and services of strategic importance and crisis-relevant goods and services in the Single Market."로 규정함.

29) European Commission, 전계 자료(각주 27), 58-59쪽.

편제: 부, 편 및 장		구성 주요 조문
제4부 단일시장 비상 상황	제1편 비상 상황 모드	발동기준(제13조), 발동(제14조), 연장 및 해제(제15조)
	제2편 단일시장 비상 상황기간중 자유이동	제1장 자유이동 복귀 및 촉진조치 단일시장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자유이동 제한 조치의 일반요건(제16조), 단일시장 비상 상황 중 자유이동권 제한 금지 사항(제17조), 지원조치(제18조)
		제2장 투명성 및 행정지원 통고(제19조), 회원국내 단일접촉창구(제21조), EU차원의 단일접촉창구(제22조) 등
	제3편 단일시장 비상 대응조치	제1장 위기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특정 정보 요청 및 가용성 이중 발동 요건(제23조), 경제사업자에 대한 정보 요청(제24조), 정보의 기밀성 및 처리(제25조), 통일(규격)제품입법의 특정 개정(제26조), 우선처리 명령(제27조), 의무정보 요청 응답 의무나 우선처리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벌금(제28조) 등
		제2장 위기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가용성 보장을 위한 기타조치 전략비축물자의 배분 조정(제32조), 위기 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가용성 및 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제33조)
제5부 조달	제1장 경계 및 비상 상황 모드 기간중 회원국을 대신한 집행위원회의 전략적 중요 상품 및 서비스와 위기 관련 상품의 조달	회원국의 자신을 대신한 집행위원회에의 상품 및 서비스의 조달 요청(제34조) 등
	제2장 경계 및 비상 상황 모드 기간중 공동 조달	공동조달절차(제37조)
	제3장 비상 상황 모드 기간중 회원국의 조달	회원국의 개별 조달에 관한 협의 및 조정(제38조) 등
제6부 종결조항		개인데이터 보호(제40조), 디지털 장치(제41조), 위원회(제41조) 등

출처: SME이규칙안을 기초로 필자 작성

### (3) SMEI규칙안의 규율 대상, 적용 범위 및 거버넌스

#### (i) 규율 대상

- SMEI규칙안에서는 단일시장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위기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가용성을 보장할 목적에서 단일시장에 대한 위기의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 및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의 틀을 수립함

(a) 단일시장에 대한 위기의 영향을 예측, 예방 또는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해 집행위원회에 조언하는 자문그룹;

(b) 관련 정보의 입수, 공유 및 교환을 위한 조치;

(c) 예견 및 계획을 목표로 하는 비상 대응조치;

(d) 일련의 경계조치를 포함하여 아직 단일시장 비상 상황을 초래하지 않은 중대한 사건의 단일시장에 대한 영향(단일시장 경계)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

(e) 일련의 비상 대응 조치를 포함한 단일시장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sup>30)</sup>

#### (ii) 적용 범위

- SMEI규칙안에 명시된 조치는 위기가 단일시장 및 공급망의 기능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적용됨. 다만, 동 규칙안은 의약품, 의료기기, 반도체, 에너지 제품과 금융서비스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바, 이들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각기 별도의 EU 규칙이 적용됨<sup>31)</sup>

#### (iii) 거버넌스

- 규칙안에서는 각 회원국 대표 1명으로 구성된 자문그룹을 설치하도록 규정함. 자문그룹의 역할은 규칙안에 따른 위기대응 계획, 단일시장 경계 모드 및 단일시장 비상 상황 모드 등 각 단계별로 규정된 집행위원회(Commission)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임<sup>32)</sup>

30) SMEI규칙안 제1조제2항.

31) 가령, 의료제품 및 의료 장비의 경우 Regulation (EU) 2022/123 적용됨, 전계 자료(각주 18), 12쪽.

32) SMEI규칙안 제4조.

- EU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중앙연락사무소(central liaison offices) 및 EU 차원의 중앙 연락사무소와의 연락, 조정 및 정보 교환을 담당하는 중앙연락사무소를 지정하도록 규정함<sup>33)</sup>

## 2. 단일시장 위기 대응 계획

- 단일시장 위기 대응계획에 있어서 “위기(Crisis)”라 함은 EU 내부 또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성격과 규모의 예외적으로 예상하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자연적 또는 사람이 만든 사태를 가리킴<sup>34)</sup>

### (1) 위기 프로토콜

- 집행위원회는 자문그룹의 의견과 관련있는 EU 차원의 기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회원국과 협의한 후 특히, 단일시장 경계 및 비상 상황 모드에 대한 위기 협력, 정보 교환 및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위기 프로토콜”을 수립하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본 규칙안을 보완하기 위한 위임 입법을 채택할 권한을 부여받음

(a) 단일시장 부문 전반에 걸친 경계 및 비상 상황 모드에서 단일시장 경계 및 비상 상황 모드를 관리하는 국가 및 EU 차원의 관할 당국 간의 협력;

(b) 안전한 정보 교환을 위한 일반적인 방식;

(c) 집행위원회의 조정 역할과 함께 대중에 대한 위험 및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조정된 접근방식;

(d) 프레임워크의 관리<sup>35)</sup>

- 집행위원회는 앞에 언급된 프레임워크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과 함께 스트레스 테스트, 시뮬레이션, 조치 중 및 조치 후 검토를 수행할 수 있고, 관련된 EU 차원의 기관들과 회원국들에게 필요에 따라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하도록 제안할 수 있음<sup>36)</sup>

33) SME규칙안 제5조.

34) SME규칙안 제3조제1항.

35) SME규칙안 제6조제1항.

36) SME규칙안 제6조제3항.



## (2) 훈련 및 시뮬레이션

- 집행위원회는 지정된 중앙 연락 사무소의 직원을 대상으로 제6조에 언급된 위기 조정, 협력 및 정보 교환에 관한 교육을 조직해야 함. 집행위원회는 단일시장 비상 상황의 잠재적 시나리오에 따라 모든 회원국의 중앙연락사무소 직원과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조직해야 함<sup>37)</sup>

## (3) 조기 경고용 임시 경보(Ad hoc alerts for early warning)

- 회원국의 중앙연락사무소는 단일시장 및 그 공급망 기능에 중대하게 혼란을 초래하거나 중대하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태(중대한 사태[significant incidents])를 부당한 지체없이 집행위원회와 다른 회원국의 중앙연락사무소에 통보해야 함<sup>38)</sup>
- 단일시장과 그 상품 및 서비스 공급망 기능의 혼란(disruption) 또는 잠재적 혼란이 중대하거나 경보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회원국의 중앙연락 사무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 (a) 혼란 또는 잠재적 혼란의 영향을 받는 경제사업자의 수;
  - (b) 혼란 또는 잠재적 혼란의 지속 기간이나 예상 기간;
  - (c) 지리적 영역; 당해 혼란 또는 잠재적 혼란의 영향을 받는 단일시장의 비율; EU의 최외곽 지역을 포함하여 공급망 혼란에 특히 취약하거나 노출된 특정 지리적 지역에 대한 영향;
  - (d) 혼란 또는 잠재적 혼란이 다변화가 불가하고 대체불가능한 투입재에 미치는 영향<sup>39)</sup>

---

37) SME규칙안 제7조.

38) SME규칙안 제8조제1항.

39) SME규칙안 제8조제3항.

### 3. 단일시장 경계

#### 3.1. 경계 모드

- 먼저 규칙안에 따르면, “단일시장 경계 모드(Single Market vigilance mode)”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에 중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향후 6개월 이내에 단일시장 비상 상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틀을 가리킴.<sup>40)</sup> 여기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 및 서비스”라 함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단일시장의 기능을 보장하는 데 필수 불가결하여, 대체하거나 다변화할 수 없는 재화와 서비스를 가리킴.<sup>41)</sup> 또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라 함은 EU와 회원국에게 있어 공공 안보, 공공 안전, 공공 질서 또는 공중 보건에 있어 체계적이고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이의 혼란, 실패, 손실 또는 파괴가 단일 시장의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분야를 가리킴<sup>42)</sup>

##### (1) 발동

- 집행위원회는 자문그룹이 제공한 의견을 고려하여 규칙안에 언급된 위협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행법을 통해 최대 6개월 동안 경계 모드를 발동함. 동 이행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a) 위기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평가;
  - (b) 전략적으로 중요한 관련 상품 및 서비스 목록 그리고
  - (c) 취해야 할 경계조치

##### (2) 연장 및 해제

- 집행위원회는 자문단이 제시한 의견을 고려하고 경계 모드 발동 사유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한 경우 이행법을 통해 최장 6개월의 범위에서 경계 모드를 연장할 수 있음<sup>43)</sup>

40) SME규칙안 제3조제2항.

41) SME규칙안 제3조제5항.

42) SME규칙안 제3조제4항.

43) SME규칙안 제10조제1항.

- 집행위원회는 자문그룹이 제시한 의견을 고려하여 규칙안에 언급된 위협이 경계조치의 일부 또는 전체 또는 상품과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체와 관련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행법을 통해 경계 모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야 함<sup>44)</sup>

### 3.2. 경계조치

#### (1) 모니터링

- 경계 모드가 발동된 경우, 국가 관할 당국은 경계 모드를 발동하는 이행법에서 확인된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망을 모니터링해야 함<sup>45)</sup>
- 집행위원회는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처리를 위한 표준화되고 안전한 수단을 제공해야 함. 영업비밀을 포함하여 수집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국내법을 침해하지 아니하면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와 유럽 연합이나 그 회원국의 안보 및 공공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해 그 기밀을 보장해야 함<sup>46)</sup>
- 회원국은 경계 모드를 발동하는 이행법에서 확인된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망을 따라 운영되는 각국의 영토에 설립된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경제사업자의 목록을 작성, 유지해야 함<sup>47)</sup>
- 국가 관할 당국은 위기 프로토콜(제6조)에 따라 설정된 인벤토리를 기반으로, 경계 모드 발동(제9조)에 따라 채택된 이행법에서 확인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망에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사업자와 이들의 각 국가 영토에 설립된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자발적인 정보 제공 요청을 송달해야 함. 이러한 요청에는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식별된 상품 및 서비스의 가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각 경제사업자와 이해관계자는 정보 교환을 규율하는 EU의

44) SME규칙안 제10조제2항.

45) SME규칙안 제11조제1항.

46) SME규칙안 제11조제2항.

47) SME규칙안 제11조제3항.

경쟁 규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함. 국가 관할 당국은 관련 조사 결과를 각 중앙연락사무소를 통해 지체없이 위원회와 자문그룹에 전달해야 함<sup>48)</sup>

- 국가 관할 당국은 정보 요청과 관련될 수 있는 경제사업자,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적절히 고려하고 이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함<sup>49)</sup>
- 집행위원회는 자문그룹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망 모니터링에 기반한 조사 결과와 전개 전망에 대해 논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sup>50)</sup>

## (2) 전략적 비축

- 집행위원회는 부족의 가능성과 영향을 고려하여 경계 모드 발동(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이행법에 열거된 전략적으로 중요한 물품 중에서 단일시장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할 필요가 있는 물품을 확인할 수 있음. 집행위원회는 이를 회원국에 고지해야 함<sup>51)</sup>
- 집행위원회는 이행법에 의거 회원국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이행법에 열거된 상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a) 자국 영토 내 현재 재고량;
  - (b) 추가 구매 가능성;
  - (c) 대체 공급을 위한 모든 옵션;
  - (d) 해당 상품의 가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추가 정보<sup>52)</sup>
- 이행법에서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물품을 명시해야 하고, 회원국은 자국이 보유한 전략적 중요 물품의 전략적 비축 수준과 자국 영토에 보유한 그러한 물품의 기타 재고 수준을 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함<sup>53)</sup>

48) SME규칙안 제11조제4항.

49) SME규칙안 제11조제5항.

50) SME규칙안 제11조제6항.

51) SME규칙안 제12조제1항.

52) SME규칙안 제12조제2항.

53) 상계 조문.

## 4. 단일시장 비상 상황

- 먼저 “단일시장 비상 상황(Single Market emergency)”이라 함은 단일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이나 단일시장의 필수적인 사회 또는 경제 활동의 유지에 불가결한 그러한 공급망의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위기가 단일시장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의미한다고 정의됨<sup>54)</sup>

### 4.1. 비상 상황 모드

#### (1) 발동 기준

- 단일시장에 대한 위기의 영향이 단일시장 비상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목적으로 혼란의 심각성을 평가할 때, 집행위원회는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에 근거하여 최소한 다음의 지표들을 고려해야 함
  - (a) 그 위기가 관련 이사회의 위기 대응 메커니즘, 공동체 시민 보호 메커니즘 또는 EU 보건 안보 프레임 워크 내에 설치된 메커니즘 등의 발동을 야기하였는지;
  - (b)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단일시장의 혼란해진 부문(들)에 의존하는 경제 사업[기업] 또는 이용자의 수에 대한 추정;
  - (c) 해당 재화 또는 서비스가 다른 부문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 (d) 경제 및 사회 활동, 환경 그리고 공공 안전에 대한 그 정도와 기간의 관점에서의 영향
  - (e) 영향을 받는 경제사업자가 자발적인 기초에서 위기의 특정 측면에 대해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었는지;
  - (f) 해당 부문(들)에서 영향을 받는 경제사업자의 시장 지위;
  - (g) 단일시장에서 중요한 사회 또는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공급망의 기능에 대한 국경 간 영향을 포함하여 영향을 받고 있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리적 영역;
  - (h)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대체 수단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충분한 공급 수준을 유지하는 데 있어 영향을 받는 경제사업자의 중요성과 그리고
  - (i) 대체 상품, 투입물 또는 서비스의 부재<sup>55)</sup>

54) SME규칙안 제3조제3호.

55) SME규칙안 제13조제1항.

## (2) 발동

- 단일시장 비상 상황 모드는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단일시장 경계 모드가 이전에 발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동될 수 있음. 경계 모드가 이전에 발동된 경우, 비상 상황 모드가 이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집행위원회는 자문그룹이 제시한 의견을 고려하여 단일시장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일시장 비상 상황 모드의 발동을 이사회(council)에 제안해야 함
- 이사회는 이사회이행법(council implementing act)을 통해 단일시장 비상 상황 모드를 발동할 수 있고, 발동 기간은 이행법에 명시되어야 하며 최대 6개월임
-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단일시장 비상 상황 모드의 발동은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제11조 및 12조에 규정된 경계 모드의 발동이나 이의 지속적인 적용 및 조치의 실시를 방해하지 아니함
- 단일시장 비상 상황 모드가 발동되는 즉시 집행위원회는 지체없이 이행법을 통해 위기 관련 상품 및 서비스 목록(list of crisis-relevant goods and services)을 채택해야 함. 이 목록은 이행법을 통해 수정될 수 있음<sup>56)</sup>

## (3) 연장 및 해제

- 집행위원회는 자문그룹이 제공한 의견을 고려하여 단일시장 비상 상황 모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일시장 비상 상황 모드의 연장을 이사회에 제안해야 함. 긴급하고 예외적인 상황 변화가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단일시장 비상 상황 모드가 발동된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연장을 위해 노력해야 함. 이사회는 이행법을 통해 단일시장 비상 상황 모드를 한 번에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sup>57)</sup>

56) SME규칙안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

57) SME규칙안 제15조제1항.

- 집행위원회는 자문그룹이 제출한 의견을 고려하여 단일시장 비상 상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사회에 단일시장 비상 모드의 해제를 제안해야 함<sup>58)</sup>

## 4.2. 단일시장 비상 상황 기간중 자유 이동

### 4.2.1. 자유 이동 복귀 및 촉진 조치

#### (1) 단일시장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한 자유 이동 제한 조치의 일반 요건

- 단일시장 비상 상황 및 근본적인 위기에 대응하여 회원국별 조치를 채택하고 적용할 때, 회원국은 그 조치가 조약 및 EU법, 특히 다음에 규정된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함
  - (i) 모든 제한은 한시적이어야 하며 상황이 허용하는 대로 즉시 해제해야 하고, 모든 제한은 국경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야 함
  - (ii) 시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모든 요건은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해서는 아니됨
  - (iii) 회원국은 시민, 소비자, 기업, 근로자 및 그 대리인에게 자유 이동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방식으로 알려야 함
  - (iv) 회원국은 해당 조치가 발효되기 전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근로자 및 서비스 제공자 포함)에게 상품, 서비스 및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사회적 파트너 및 국제 파트너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보장해야 함<sup>59)</sup>

#### (2) 단일시장 비상 상황 시 자유 이동권 제한의 금지 사항

- 단일시장 비상 상황 모드 동안 및 단일시장 비상 상황에 대응할 때 회원국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도입하는 것을 삼가야 함

58) SME규칙안 제15조제2항.

59) SME규칙안 제16조.

- (i) 이행법에 열거된 위기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역내 수출 금지나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기타 조치
- (ii) EU 역내 상품의 수출 또는 서비스의 공급이나 받는 것에 대한 제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갖는 조치로서 그러한 제한이 이행법에 열거된 위기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량을 교란하거나 또는 단일시장에서 해당 상품 및 서비스의 부족을 초래 또는 증대시키는 경우
- (iii) 제14조제5항에 따라 채택된 이행법에 열거된 위기 관련 상품 및 그 부품의 생산 또는 제14조제5항에 따라 채택된 이행법에 열거된 위기 관련 서비스의 공급에 관여하는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제한 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기타 조치로서 이로 인해 단일시장에서 필요한 인력의 부족을 초래하여 위기 관련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망에 혼란을 발생시키거나 단일시장에서 그러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증가시키는 경우<sup>60)</sup>

### (3) 지원조치

- 단일시장 비상 상황 모드 동안 집행위원회는 이행법을 통해 제17조제6항 및 제17조제7항에 언급된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조치를 제공할 수 있음<sup>61)</sup>

## 4.2.2. 투명성 및 행정지원

### (1) 통보

- 단일시장 비상 상황 동안 회원국은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서비스 공급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기 관련 조치 초안과 근로자를 포함한 사람의 자유 이동의 위기 관련 제한 조치를 해당 조치의 이유와 함께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이러한 통보는 심각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회원국이 해당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됨. 회원국은 조치를 즉시 채택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근거와 함께 채택된 조치를 즉시 통보해야 함<sup>62)</sup>

60) SME규칙안 제17조제1항.

61) SME규칙안 제18조제1항.

62) SME규칙안 제19조제1항.



## (2) 행정지원

- 회원국은 시민, 소비자, 경제사업자, 근로자 및 그 대리인에게 발동된 단일시장 비상 상황과 관련된 상품, 서비스, 사람 및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회원국의 제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취득하는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별 단일 접촉처(national single points of contact)를 운영해야 함<sup>63)</sup>
- 집행위원회는 EU 차원의 단일 접촉처를 설치, 운영해야 함<sup>64)</sup>

## 4.3. 단일시장 비상 대응조치

### 4.3.1. 위기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특정 정보 요청 및 가용성 관련

- 먼저 “위기 관련 상품 및 서비스”라 함은 위기에 대응하거나 위기가 단일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는 데 불가결한 상품 및 서비스를 의미함<sup>65)</sup>

#### (1) 이중 발동 요건

- SMEI규칙안 제23조 이하에 규정된 위기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특정 정보 요청과 같은 구속력 있는 대응조치는 동 규칙안의 관련 규정<sup>66)</sup>에 따른 이행법에 의거 집행위원회가 채택할 수 있고, 동 대응조치는 제14조에 따른 이사회 이행법에 의거 단일시장 비상 상황이 발동된 이후에만 채택될 수 있음<sup>67)</sup>
- 상술한 대응조치를 도입하는 이행법에서는 해당 조치가 적용되는 위기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함. 해당 조치는 비상 상황 모드가 지속되는 동안에만 적용됨<sup>68)</sup>

63) SMEI규칙안 제21조제1항.

64) SMEI규칙안 제22조제1항.

65) SMEI규칙안 제3조제5항.

66) 이는 SMEI규칙안 제24조제2항,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제2항을 가리킴.

67) SMEI규칙안 제23조제1항

68) SMEI규칙안 제23조제2항.

## (2) 경제사업자에 대한 정보 요청

- 심각한 위기 관련 (공급)부족이나 이의 즉각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위기 관련 공급망의 대표단체나 경제사업자들로 하여금 (i) 관련 공급망 혼란에 대한 정보를 주어진 기한 내에 집행위원회에 전달하거나 (ii) EU 내 생산 시설과 상기 대표단체나 경제사업자가 운영하거나, 계약하거나 또는 공급을 구매하는 제3국 시설에서의 위기 관련 상품 및 그 부품의 생산능력과 가능한 기존 재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전달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sup>69)</sup>
- 피신청인이 집행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정보를 기한 내에 전송하지 않고 이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이행법에 근거하여 정보 요청과 관련된 위기 관련 상품 및 서비스와 피신청인을 적기한 정보와 받고자 하는 정보를 피신청인이 전달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sup>70)</sup>
- 요구되는 정보 요청은 다음에 관한 것일 수 있음
  - (i) EU에 위치한 생산 시설 및 단체나 경제사업자가 운영하거나, 계약하거나 또는 공급을 구매하는 제3국에 위치한 생산 시설에서 위기 관련 상품 및 그 부품의 생산능력과 가능한 기존 재고와 관련한 특정 정보. 다만, 영업 및 거래 비밀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EU 내에 위치한 생산 시설에서의 향후 3개월 동안의 예상 생산량 일정은 물론 관련 공급망 혼란에 대한 정보를 집행위원회에 전달하도록 요구할 것임
  - (ii) 특정 공급망 혼란 또는 부족의 성격 또는 규모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타 정보<sup>71)</sup>
- 이행법을 통해 경제사업자에 대한 의무적 정보 요청이 발동된 후, 집행위원회는 이행법에 명기된 위기 관련 공급망의 각 대표단체 또는 경제사업자에게 이행법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공식 결정을 송달해야 함<sup>72)</sup>
- 개별 정보 요청을 포함하는 위원회 결정에는 그 근거가 되는 제2항에 언급된 이행법 및 심각한 위기 관련 부족 상황 또는 그러한 상황을 초래한 즉각적인 위협에 대한 언급이 포함

69) SME규칙안 제2조제1항.

70) SME규칙안 제24조제2항.

71) SME규칙안 제24조제3항.

72) SME규칙안 제24조제4항.

되어야 함. 모든 정보 요청은 데이터의 양, 성격 및 세분성은 물론 요청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 빈도 측면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근거가 있어야 하고, 비례적이어야 하며, 비상 상황의 관리 또는 관련 공식 통계 작성에 필요한 것이어야 함. 요청에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합리적인 기한이 명시되어야 하며, 경제사업자 또는 대표단체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고려해야 함. 또한 공식 결정에는 본 규칙안 제39조에 따른 데이터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제25조에 따른 회신에 포함된 민감한 비즈니스 정보의 비공개에 대한 안전장치 및 EU법에 따라 유럽사법재판소에서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불이행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과 답변 일정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sup>73)</sup>

- 경제사업자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 법인의 경우 회사 또는 법인격 없는 협회,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해 이들을 대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은 해당 경제사업자나 경제사업자 협회를 대신하여 요청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각 경제사업자 또는 경제사업자 협회는 정보 교환을 규율하는 경쟁에 관한 EU규칙에 따라 요청된 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해야 함.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을 대신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sup>74)</sup>
-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집행위원회가 경제사업자에게 의무적 정보 요청을 부과한 결정을 검토할 수 있는 제약없는 관할권을 가짐<sup>75)</sup>
- 앞에 언급된 이행법은 규칙안 제42조제2항에 규정된 위원회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함. 위기가 단일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정당한 긴급성 근거가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규칙안 제42조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즉시 적용가능한 이행법을 채택해야 함<sup>76)</sup>

### (3) 정보의 기밀성 및 처리(25조)

- 본 규칙안에 따라 받은 정보는 그 요구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회원국과 집행위원회는 본 규칙안의 적용으로 취득 및 생성된 영업 및 거래 비밀과 기타 민감하고 기밀인 정보의 보호를 EU 및 각 회원국 법에 따라 보장해야 함.<sup>77)</sup> 또한 집행위원회는 정보 공유로

73) SMEI규칙안 제24조제5항.

74) SMEI규칙안 제24조제6항.

75) SMEI규칙안 제24조제7항.

76) SMEI규칙안 제24조제8항.

77) SMEI규칙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인해 해당 사업자에게 상업적 또는 평판상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영업비밀이 누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별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해서는 아니됨<sup>78)</sup>

#### (4) 통일(규격)제품입법의 특정 개정(26조)

- 본 규칙안 제14조에 따라 채택된 이사회 이행법에 의거 단일시장 비상 상황 모드가 발동되고 위기 관련 상품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 집행위원회는 위기 관련 상품과 관련하여 "긴급절차 규칙안"<sup>79)</sup>과 "긴급절차 지침안"<sup>80)</sup>에 따라 개정된 이행법에 의거 EU의 관련 법체계에 포함된 적합성평가 등에 관한 긴급절차를 발동할 수 있게 됨

#### (5) 우선 처리 명령(27조)

- 규칙안에서는 집행위원회가 EU 내에 구축된 위기 관련 공급망에 속한 하나 이상의 경제사업자에게 위기 관련 상품의 생산 또는 공급을 위한 특정 주문을 수락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우선 처리 명령" 제도에 대해 규정함<sup>81)</sup>

#### (6) 의무 정보 요청 응답 의무나 우선 처리 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자에 대한 벌금

- 규칙안에서는 의무 정보 요청에 응답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우선 처리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집행위원회는 필요하고 비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결정을 통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함<sup>82)</sup>
  - (i) 경제사업자의 대표 단체나 경제사업자가 규칙안 제24조에 따른 요청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78) SME규칙안 제25조제5항.

79) European Commission, COM(2022) 461 final, 2022/0279 (COD), Brussels, 2022. 9. 19.

80) European Commission, COM(2022) 462 final, 2022/0280 (COD), Brussels, 2022. 9. 19.

81) SME규칙안 제27조제1항.

82) SME규칙안 제28조제1항.

- (ii) 경제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집행위원회에 규칙안 제27조에 따른 제3국 의무를 고지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자신이 우선 처리 명령을 수락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 벌금은 200,000유로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sup>83)</sup>
- (iii) 경제사업자가 제27조에 따라 위기 관련 상품에 대한 주문을 우선 처리하기로 수락한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에 부과되는 벌금은 제27조 (우선처리 등급 주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각 영업일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 일일 평균 매출액의 1%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을 통해 정한 날로부터 계산됨<sup>84)</sup>

#### 4.3.2. 위기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가용성 보장을 위한 기타 조치

##### (1) 전략비축물자의 배분 조정

- 규칙안 제12조에 따라 회원국이 조성한 전략적 비축량이 단일시장 비상 상황과 관련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자문그룹이 제공한 의견을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 단일시장 비상 상황의 영향을 특별히 받는 지리적 지역을 포함하여 단일시장의 혼란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 필요성을 고려하고 필요성, 비례성 및 연대의 원칙에 따라 그리고 단일시장 비상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비축량 사용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략비축물자를 방출하도록 회원국에 권고할 수 있음.<sup>85)</sup> 여기서 전략비축물자라 함은 회원국의 통제하에 단일시장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이 필요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의 재고를 의미함<sup>86)</sup>

##### (2) 위기 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가용성 및 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 집행위원회는 위기 관련 물품의 부족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원국에 공급망과 생산라인의 효율적인 재편과 기존 재고의 사용을 보장하고, 위기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83) SME규칙안 제28조제1항제(a)호 및 동 제2항.

84) SME규칙안 제28조제1항제(c)호 및 동 제3항.

85) SME규칙안 제32조.

86) SME규칙안 제3조제7항.

가용성과 공급을 가능한 한 신속히 증대시키기 위해 기존 재고를 사용하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sup>87)</sup>

- 특히, 앞에 언급된 조치에는 다음의 조치를 포함할 수 있음
  - (i) 위기 관련 물품에 대한 기존 생산능력의 확장 또는 용도 변경 또는 신규 생산능력의 설립을 촉진하는 조치;
  - (ii) 서비스 활동과 관련된 기존 생산능력의 확장 또는 신규 생산능력의 설립을 촉진하는 조치;
  - (iii) 위기 관련 물품의 허가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치<sup>88)</sup>

## 5. EU 및 회원국에 의한 조달

- (1) 경계 및 비상 상황 모드 기간중 회원국을 대신한 집행위원회의 전략적 중요 상품 및 서비스와 위기 관련 상품의 조달
  - 둘 이상의 회원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이행법에 열거된 전략적 중요 상품 및 서비스 또는 제14조제5항에 따라 채택된 이행법에 열거된 위기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위해 집행위원회가 대리하여 주기를 원하는 회원국(‘참여 회원국’)을 대신하여 동 위원회가 조달을 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sup>89)</sup>
  -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을 대신하여 조달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동 위원회가 회원국을 대신하여 조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참여 회원국과 체결할 기본협정안을 작성하여야 함. 이 협정에는 참여 회원국을 대신한 조달에 관한 세부 조건이 명시되어야 함<sup>90)</sup>

87) SME규칙안 제32조.

88) SME규칙안 제33조.

89) SME규칙안 제34조제1항.

90) SME규칙안 제34조제3항.

## (2) 경계 및 비상 상황 모드 기간중 공동 조달

-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EU, Euratom) 2018/1046 제165조(2)에 규정된 규칙에 따라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의 하나 이상의 계약 당국 간에 공동 조달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당해 회원국은 공동으로 조달한 용량을 전적으로 취득, 임대 또는 임차할 수 있음<sup>91)</sup>

---

91) SME규칙안 제37조.

# Ⅲ 단일시장 비상 상황시 적합성 평가 및 공동 사양 채택 등에 관한 긴급절차 규칙안 및 지침안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 1. 도입 배경

- SMEI규칙안 제26조에서는 단일시장 비상 상황시 긴급 대응조치의 하나로서 적합성 평가와 공동 사양 채택 및 시장 감시 등 3개 사안에 대해 현행 관련 규칙 및 지침을 개정하여 긴급 절차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기초가 되는 새로운 EU 규칙안 및 지침안을 제안하고 있음. 이러한 긴급 절차 도입을 위한 신규 규칙안 및 지침안의 제안 배경은 비상 상황에서 현행 적합성 평가 절차를 완화하거나 공동 사양(common specifications)을 채택함으로써 적용 대상 부문에 속한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신속히 함으로써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다만, 긴급 절차가 적용되는 대상 부문은 규칙안 및 지침안에서 각기 규정함
- 참고로 EU 규칙(Regulation)의 경우 회원국 내에 직접 적용되고 그 전체로서 구속력을 가지는 법령의 형태인 관계로 회원국의 입법 재량이 없음에 비해 지침(Directive)의 경우 입법 취지 및 대강의 내용만을 규정하여 각 회원국은 그 집행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sup>92)</sup>

92) 홍승진, 유럽연합의 법령 입안을 위한 공동 실무가이드(1)(Joint Practical Guide for the Drafting of Community Legislation), 2009: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1176](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1176)



## 2. 긴급 절차 규칙안의 주요 내용

### (1) 긴급 절차 규칙안의 적용 대상 현행 규칙 및 특징

- 긴급 절차 규칙안<sup>93)</sup>을 통해 개정하고자 하는 적용 대상 부문은 5건이며, 동 부문을 규율하는 현행 EU 규칙은 케이블웨이 설치에 관한 규칙 (EU) 2016/424, 개인 보호 장비에 관한 규칙 (EU) 2016/425, 가스 기기에 관한 규칙 (EU) 2016/426, 비료 제품에 대한 규칙 (EU) 2019/1009 및 건설 제품에 대한 규칙 (EU) 305/2011 등임<sup>94)</sup>
- 긴급 절차 규칙안의 적용 대상 부문 규제 틀은 소위 "조화 제품(harmonised products)"에 속하는 것들임. 이러한 부문별 규제 틀의 공통점은 설계, 제조, 적합성 평가 및 해당 제품의 시장 출시에 관한 조화된[통일적인] 규칙(harmonised rules)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임. 본질적으로, 이러한 부문별 규제 틀은 각 부문/제품 범주에 대해 당해 제품이 충족해야 하는 필수적인 안전 요건과 이러한 요구 사항 준수를 평가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있음. 이러한 규칙들은 완전한 조화[통일]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원국은 비상 상황에서라도 각 규제 틀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이러한 규칙을 무시할 수 없음.<sup>95)</sup> 이 점에서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긴급 절차 규칙안에서는 비상 상황시 적용 대상 부문 및 제품에 대해 현행 규제 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한편, 의료기기 규칙(EU) 2017/745 및 체외 진단 의료기기 규칙(EU) 2017/746 등에서는 이미 특정 경우에 회원국이 조화[통일]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동 규칙들은 긴급 절차 규칙안을 통해 달리 현행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없게 됨<sup>96)</sup>

### (2) 긴급 절차 규칙안의 핵심 규정

- 긴급 절차 규칙안을 통해 개정 대상이 되는 현행 EU 규칙은 5개인바, 규칙안에서는 5개 조문에서 개정 대상 부문/제품을 규율하는 현행 규칙에 긴급 절차의 도입을 위해 다음의 7개 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 규정하고, 규칙안 제6조에서 발효 규정을 두고 있음

93) 동 규칙안의 정식 명칭은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Regulations (EU) 2016/424, (EU) 2016/425, (EU) 2016/426, (EU) 2019/1009 and (EU) No 305/2011 as regards emergency procedures for the conformity assessment, adoption of common specifications and market surveillance due to a Single Market emergency"이며, 문서의 출처는 전계 자료(각주 79).

94) 전계 자료(각주 79), 7쪽.

95) 상계 자료.

96) 상계 자료.

- 여기서 긴급 절차 규칙안의 개정 대상인 현행 규칙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개정 내용 7개항을 동 규칙안 “제1조 규칙 (EU) 2016/424에 대한 개정”을 예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i) 긴급 절차의 적용
  - (ii) 위기 관련 하위 시스템 및 안전 구성 요건의 적합성 평가의 우선 처리
  - (iii) 통고 기관의 의무적 관여를 요구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의 비준수
  - (iv) 국가 및 국제표준에 기초한 적합성의 추정
  - (v) 적합성 추정을 부여하는 공동 사양의 채택
  - (vi) 강제 공동 사양의 채택
  - (vii) 시장 감시 활동의 우선 수행과 당국들간 상호 지원

### 3. 긴급 절차 지침안의 주요 내용

#### (1) 긴급 절차 지침안의 적용 대상 현행 지침들 및 특징

- 긴급 절차 지침안<sup>97)</sup>을 통해 개정하고자 하는 적용 대상 부문은 14개이며, 동 부문을 규율하는 현행 EU 또는 EC 지침들로는 운송용 압력 장비에 대한 지침 2010/35/EU, 실외 사용 장비에 의한 환경 소음 배출에 관한 지침 2000/14/EC, 기계류에 관한 지침 2006/42/EU, 불꽃놀이 제품에 관한 지침 2013/29/EU, 민간 폭발물에 관한 지침 2014/28/EU, 단순 압력 용기에 관한 지침 2014/29/EU, 전자기 호환성에 관한 지침 2014/30/EU, 비자동 계량 기기에 대한 지침 2014/31/EU, 측정 기기에 대한 지침 2014/32/EU, 리프트에 대한 지침 2014/33/EU, 잠재적 폭발 가능성이 있는 대기 장비(ATEX)에 대한 지침 2014/34/EU, 저전압 장비에 관한 지침 2014/35/EU, 무선 장비에 관한 지침 2014/53/EU 및 압력 장비에 관한 지침 2014/68/EU 등이 그러함<sup>98)</sup>
- 긴급 절차 지침안의 적용 대상 부문 규제 틀(Framework)은 소위 "조화 제품"(Harmonised products)에 속하는 것들임. 이러한 부문별 규제 틀의 공통점은 설계, 제조, 적합성 평가

97) 동 지침안의 정식 명칭은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s 2000/14/EC, 2006/42/EC, 2010/35/EU, 2013/29/EU, 2014/28/EU, 2014/29/EU, 2014/30/EU, 2014/31/EU, 2014/32/EU, 2014/33/EU, 2014/34/EU, 2014/35/EU, 2014/53/EU and 2014/68/EU as regard emergency procedures for the conformity assessment, adoption of common specifications and market surveillance due to a Single Market emergency"이며, 문서의 출처는 전기 자료(각주 80).

98) 상계 자료, 7쪽.

및 해당 제품의 시장 출시에 관한 조화된[통일적인] 규칙(Harmonised rules)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임. 본질적으로, 이러한 부문별 규제 틀은 각 부문/제품 범주에 대해 당해 제품이 충족해야 하는 필수적인 안전 요건과 이러한 요구 사항 준수를 평가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완전한 조화[통일]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원국은 비상 상황에서도 각 규제 틀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이러한 규정을 무시할 수 없음.<sup>99)</sup> 이 점에서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긴급 절차 지침안에서는 비상 상황시 적용 대상 부문/제품에 대해 현행 규제 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2) 긴급 절차 지침안의 핵심 규정

- 긴급 절차 지침안을 통해 개정 대상이 되는 현행 EU 지침은 15개인바, 동 지침안에서는 15개 조문에서 개정 대상 부문/제품을 규율하는 현행 지침에 긴급 절차의 도입을 위한 개정 조항을 규정하고, 지침안 제16조에서 발효 규정을 두고 있음
- 여기서 긴급 절차 지침안의 개정 대상 현행 지침별 적용되는 개정 내용은 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바, 동 지침안 “제2조 지침 2006/42/EC에 대한 개정”을 예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i) 긴급 절차의 적용
  - (ii) 위기 관련 기계류의 적합성 평가의 우선 처리
  - (iii) 통고 기관의 의무적 관여를 요구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의 비준수
  - (iv) 국가 및 국제표준에 기초한 적합성의 추정
  - (v) 적합성 추정을 부여하는 공동 사양의 채택
  - (vi) 강제 공동 사양의 채택
  - (vii) 시장 감시 활동의 우선 수행과 당국들간 상호 지원

99) 상계 자료.

## IV EU 핵심원자재법(CRMA)안 주요 내용

### 1. (1) CRMA안의 목적

#### CRMA안의 목적, 규율 대상, 법안 구조 및 거버넌스

- CRMA안<sup>100)</sup>의 일반 목적은 EU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원자재 공급을 보장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함으로써 EU 내부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sup>101)</sup>
- CRMA안은 상술한 일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i) 전략 원자재 가치사슬의 여러 단계를 강화하여 2030년까지 각 전략 원자재에 대한 EU의 생산능력을 상당히 증대하여 전체적으로 EU의 생산능력이 다음의 기준에 근접하거나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a) EU의 추출 능력은 EU의 매장량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EU의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최소 10%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광석, 광물 또는 정광을 추출할 수 있을 것
    - (b) 모든 중간 처리 단계를 포함한 EU의 처리 능력은 EU의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최소 40%를 생산할 수 있을 것
    - (c) 모든 중간 재활용 단계를 포함한 EU의 재활용 용량이 EU의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최소 15%를 생산할 수 있을 것;
  - (ii) 2030년까지 모든 관련 가공 단계에서 각 전략 원자재에 대한 EU의 연간 소비량이 EU의 연간 소비량의 65% 이상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할 수 있도록 EU의 전략 원자재에 대한 수입을 다변화할 것;
  - (iii) 핵심 원자재와 관련된 공급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완화하는 EU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

100) European Commission, COM(2023) 160 final. 2023/0079 (COD), Brussels, 2023. 3. 16.

101) CRMA안 제1조제1항.

- (iv) 순환성과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여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를 보장하면서 EU 시장에서 핵심 원자재 및 핵심 원자재를 포함하는 제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할 것<sup>102)</sup>

(2) CRMA안의 규범 구조

- CRMA안은 총 10장 4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에 따라서는 절이 편제되어 있는데 그 요체는 다음과 같고, 동 법안의 주요 규율 대상별 구성 조문의 내용은 아래의 <표 6>과 같음
  - (i) EU의 전략 원자재를 포함한 핵심 원자재의 가치사슬 강화(제3장)
  - (ii) 핵심 원자재와 관련된 리스크 모니터링 및 리스크 완화(제4장)
  - (iii) 핵심 원자재의 지속 가능성 확보(제5장)
  - (iv) 핵심 원자재를 둘러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제6장)

<표 6> CRMA안의 편제 및 구성 주요 조문

편제: 장, 절		구성 주요 조문
제1장 일반규정		규율 대상 및 목적(제1조), 정의(제2조)
제2장 핵심 및 전략 원자재		전략 원자재 리스트(제3조), 핵심 원자재 리스트(제4조)
제3장 EU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	제1절 전략 프로젝트	전략 프로젝트 인정(Recognition) 기준(제5조), 신청 및 인정(제6조), 전략 프로젝트 실행(제7조)
	제2절 허가(permit) 부여 절차	단일창구(제8조), 전략 프로젝트의 우선 대우 지위(제9조), 허가 부여 절차 기간(제10조), 환경평가 및 승인(제11조), 계획(제12조), UNECE협약 적용 가능성(제13조)
	제3절 지원 조건	실행 촉진(제14조), 자금조달 조정(제15조), 장기구매(Off-take)계약 촉진(제16조), 행정정보의 온라인 제공(제17조)
	제4절 탐사	회원국의 탐사 프로그램(제18조)
제4장 리스크 모니터링 및 완화		모니터링 및 스트레스 테스트(제19조),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제공)의무(제20조), 전략적 재고 보고(제21조), 전략적 재고의 조정(제22조), 기업의 리스크 대비(제23조), 공동 조달(제24조)

102) CRMA안 제1조제2항.

편제: 장, 절		구성 주요 조문
제5장 지속 가능성	제1절 순환성	순환성에 대한 회원국 조치(제25조), 추출 폐기물로부터 핵심 원자재 회수(제26조), 영구자석의 재활용성(제27조), 영구 자석의 재활용 내용물(제28조)
	제2절 인증 및 환경발자국	인정된 제도(제29조), 환경발자국 선언(제30조)
	제3절 자유 이동, 적합성 및 시장 감시	자유 이동(제31조), 적합성 및 시장 감시(제32조)
제6장 전략적 파트너십		전략적 파트너십(제33조)
제7장 거버넌스		유럽핵심원자재이사회(제34조), 유럽핵심원자재이사회 의 구성 및 역할(제35조)
제8장 위임 권한 및 위원회 절차		위임의 행사(제36조), 위원회 절차(제37조)
제9장 개정		현행 4건의 EU규칙에 대한 개정(제38조-제41조)
제10장 종결규정		모니터링 진전(제42조), 회원국의 보고(제43조), 기밀정보의 취급(제44조), 벌칙(제45조), 평가(제46조), 발효(제47조)

출처: SMEI규칙안을 기초로 필자 작성

### (3) 거버넌스

- 본 규칙에 명시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유럽핵심원자재이사회(European Critical Raw Materials Board, CRMB)”를 설립함. 유럽핵심원자재이사회는 회원국과 집행위원회로 구성되고, 동 이사회의 의장은 집행위원회가 맡음. 각 회원국은 동 이사회에 고위급 대표를 임명해야 함<sup>103)</sup>
- 동 이사회는 본 규칙에 명시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하고, 필요한 경우, 동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해야 함. 동 이사회는 최소한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개최해야 함
  - (i) **(3개월 주기)** 전략 프로젝트 신청서 평가
  - (ii) **(6개월 주기)** 제4장에 따른 모니터링 개발
  - (iii) **(1년 주기)** 핵심 또는 전략 원자재 리스트에 대한 업데이트를 포함하여 제3장 제4절에 명시된 탐사와 관련된 회원국의 의무 이행 상황 논의<sup>104)</sup>

103) 제34조와 제35조제1항 및 제2항.

104) CRMA안 제35조제4항.

- 동 이사회는 특정 질문과 과제를 다루기 위해 상임 또는 임시 소그룹을 설치할 수 있고, 동 이사회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상임 소그룹(standing sub-groups)을 설치해야 하며, 컨센서스를 모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함<sup>105)</sup>
  - (i) 제15조에 따른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조달을 논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소그룹;
  - (ii) 제18조에 언급된 국가 탐사 프로그램의 조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국가 지질 기관 또는 조사 기관, 또는 그러한 기관 또는 조사가 없는 경우 일반 탐사를 담당하는 관련 국가 기관이 모인 하위 그룹;
  - (iii) 핵심 원자재를 담당하는 국가 공급 및 정보기관을 소집한 하위 그룹;
  - (iv) 전략적 재고를 담당하는 국가 비상 기관 및 국가 당국을 소집한 하위 그룹<sup>106)</sup>
- 동 이사회는 컨센서스를 모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함

## 2. EU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

### (1) 전략 원자재 및 핵심 원자재의 범위

- CRMA안의 대상인 원자재는 전략 원자재와 핵심 원자재를 가리키는바, 이 두가지 유형의 원자재의 범위에 대해 규칙안에서는 동 부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 (i) 전략 원자재 리스트

- CRMA안 부록 I 제1절에 열거된 원자재가 “전략 원자재(strategic raw materials)”로 간주됨. 집행위원회는 전략 원자재 리스트를 업데이트할 권한을 부여받음. 업데이트된 전략 원자재 리스트는 평가된 원자재 중에서 전략적 중요성, 예상 수요 증가율 및 생산 증가 난이도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원자재를 포함해야 함. 집행위원회는 본 규칙 발효 4년 후 그리고 그 이후로는 매 4년마다 전략 원자재 리스트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해야 함<sup>107)</sup>

105) CRMA안 제35조제9항.

106) CRMA안 제35조제6항.

107) CRMA안 제3조.

## (ii) 핵심 원자재 리스트

- CRMA안 부록 II 제1절에 나열된 원재료가 “핵심 원자재”로 간주됨. 집행위원회는 핵심 원자재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부속서 II를 개정할 권한을 부여받음. 업데이트된 핵심 원자재 리스트에는 부록 I 제1절에 열거된 전략 원자재 뿐만 아니라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 위험에 대한 기준치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는 기타 원자재가 포함되어야 함. 기준치는 공급 위험의 경우 1, 경제적 중요성의 경우 2.8로 정함. 집행위원회는 본 규칙 발효 후 4년 그리고 그 이후로는 매 4년마다 핵심 원자재 리스트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해야 함<sup>108)</sup>

## (2) 전략 프로젝트

## (i) 전략 프로젝트의 인정 기준

- 프로젝트 추진자의 신청에 따라 제6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원자재 프로젝트를 전략으로서 인정함
  - (a) 동 프로젝트가 연합의 전략 원자재 공급의 안보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
  - (b) 프로젝트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고, 프로젝트의 예상 생산량이 충분한 수준의 신뢰도를 갖고 추정될 수 있을 것;
  - (c) 프로젝트가 특히 환경 영향의 모니터링, 예방 및 최소화, 인권 및 노동권 존중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 관행의 사용, 양질의 일자리 잠재력과 지역 사회 및 관련 사회 파트너와의 의미있는 참여 그리고 투명한 비즈니스 관행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실행될 것;
  - (d) EU 내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설립, 운영 또는 생산이 다운스트림 부문을 포함하여 해당 회원국을 넘어 국경을 넘는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
  - (e) 신흥 시장 또는 개발도상국인 제3국 프로젝트의 경우 동 프로젝트가 연합과 해당 국가에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해당 제3국에 상호 이익이 될 것<sup>109)</sup>

108) CRMA안 제4조.

109) CRMA안 제5조제1항.



- 인정 기준(Recognition criteria)의 충족 여부는 부록 III에 명시된 요소와 증거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평가함<sup>110)</sup>

#### (ii) 신청 및 허가 절차 기간

- 프로젝트 추진자는 원자재 프로젝트를 전략 프로젝트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함<sup>111)</sup>
- 연합내 전략 프로젝트의 경우 다음의 기간을 초과해서는 아니됨
  - (a) 추출을 포함하는 전략 프로젝트의 경우 24개월
  - (b) 가공 또는 재활용만 관련된 전략 프로젝트의 경우 12개월<sup>112)</sup>

#### (iii) 전략 프로젝트 실행

- 전략 프로젝트는 연합의 전략 원자재의 공급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됨<sup>113)</sup>
- 전략 프로젝트와 관련된 영토 회원국은 전략 프로젝트의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실행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sup>114)</sup>
- 유럽핵심원자재이사회는 전략 프로젝트의 실행에 대해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전략 프로젝트의 실행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프로젝트 추진자 또는 전략 프로젝트와 관련된 영토 회원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주기적으로 논의해야 함<sup>115)</sup>

### (3) 허가 부여 절차

#### (i) 단일창구

- 회원국은 핵심 원자재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부여 절차를 촉진하고 조정할 책임이 있는 국가 관할 당국 한 곳을 지정해야 하고, 행정정보를 제공해야 함. 또한 상기 국가 관할

110) CRMA안 제5조제2항.

111) CRMA안 제6조제1항.

112) CRMA안 제10조제1항.

113) CRMA안 제7조제1항.

114) CRMA안 제7조제3항.

115) CRMA안 제7조제4항.

당국은 특정 핵심 원자재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적인 결정으로 이어지는 허가 부여 절차에서 프로젝트 추진자의 유일한 연락 창구가 되어야 하며, 모든 관련 문서 및 정보의 제출을 조정해야 하는 등 단일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sup>116)</sup>

#### (ii) 전략 프로젝트의 우선 대우 지위

- EU의 전략 프로젝트와 관련된 허가 절차의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프로젝트 추진자 및 모든 관련 당국은 해당 절차가 EU 및 국내법에 따라 가능한 한 가장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보장해야 함. 또한 EU법에 규정된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U 내 전략 프로젝트는 국내법에 그러한 지위가 존재하는 경우 가능한 한 최고의 지위를 부여해야 하고 허가 부여 절차에서 그에 따른 대우를 부여해야 함<sup>117)</sup>

#### (iii) 환경영향 평가 및 승인

- 지침 2011/92/EU 제5조 내지 제9조에 따라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관련 프로젝트 추진자는 동 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포함될 정보의 범위 및 세부 수준에 대해 제8조제1항에 언급된 국가 관할 기관에 의견을 요청해야 함. 제8조제1항에 언급된 국가 관할 당국은 제1항에 언급된 의견을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프로젝트 추진자가 요청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안에 제시해야 함<sup>118)</sup>

### (4) 지원 조건

#### (i) 실행 촉진

-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유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해야 함. 이러한 활동에는 금융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제공 및 조정이 포함될 수 있음<sup>119)</sup>
- 회원국은 전략 프로젝트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실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116) CRMA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117) CRMA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118) CRMA안 제11조제1항.

119) CRMA안 제14조제1항.

- (a) 해당 행정 및 보고 의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
- (b) 프로젝트의 대중적 수용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한 프로젝트 추진자에 대한 지원 및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적 지원<sup>120)</sup>

#### (ii) 자금조달 조정

- 유럽핵심원자재이사회의 상임 소그룹은 전략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추진자의 요청에 따라 기확보된 자금을 고려하고 최소한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을 완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조언해야 함
  - (a) 추가적인 민간 자원 조달;
  - (b) 유럽투자은행 그룹 또는 유럽부흥개발은행을 포함한 기타 국제 금융 기관의 재원을 통한 지원;
  - (c) 국책은행 및 기관을 포함한 기존 회원국 제도 및 프로그램;
  - (d) 관련 EU 기금 및 융자 프로그램<sup>121)</sup>

#### (iii) 장기구매계약(Off-take agreement)

- 집행위원회는 경쟁 규칙을 준수하되 전략 프로젝트와 관련된 장기구매계약(Off-take agreement)<sup>122)</sup> 체결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동 시스템은 잠재적 장기구매계약자(Potential off-taker)가 (a) 구매하고자 하는 전략 원자재의 수량과 품질, (b) 의도한 가격 또는 가격 범위, (c) 장기구매계약의 의도된 기간을 명시하는 입찰(Bids)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 더불어 동 시스템은 전략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추진자가 (a)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전략 원자재의 양과 품질, (b)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 또는 가격 범위, (c) 장기구매 계약의 의도된 기간을 명시하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sup>123)</sup>

120) CRMA안 제14조제2항.

121) CRMA안 제15조.

122) 여기서 장기구매계약(Off-take agreement)이란 프로젝트회사(또는 특수목적회사)와 구매자(프로젝트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가리킴. 장기구매계약의 목적(또는 의도)은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하는 프로젝트회사에 사업 차입금의 부채를 상환하고, 사업운영비를 충당하며 또한 사업주들(투자자 포함)에게 약정된 이윤을 지급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수입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임, 국토일보,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Off-take Agreement(1): 장기구매계약(1), 2020. 7. 27자.

123) CRMA안 제16조제1항제3항.

- 집행위원회는 상술한 시스템에 따라 접수된 입찰 및 제안을 기초로 전략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추진자를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잠재적 장기구매계약자들과 접촉하게 하여 주어야 함<sup>124)</sup>

(5) 회원국 탐사 프로그램

- 각 회원국은 중요 원자재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탐사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함. 각 회원국은 이 규칙의 발효일로부터 1년 후까지 첫 번째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하고, 국가 프로그램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해야 함<sup>125)</sup>
- 상술한 국가 탐사 프로그램(national exploration programmes)에는 심부 광상 매장지를 포함하여 연합의 핵심 원자재 부존에 대한 가용 정보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함. 여기에는 적절한 경우 적절한 규모의 광물 매핑, 지구물리 조사와 같은 지구과학적 조사, 예측 지도 개발을 포함하여 일반 탐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처리, 핵심 원자재를 포함하는 미확인 광물 부존을 확인하기 위한 기존 지구과학 조사 데이터의 재처리 등이 포함되어야 함<sup>126)</sup>

3.

**리스크  
모니터링  
및 완화**

(1) 리스크 모니터링 및 스트레스 테스트

- 집행위원회는 핵심 원자재와 관련된 공급 위험을 모니터링해야 함. 이러한 모니터링은 최소한 (a) 무역 흐름, (b) 수요 및 공급, (c) 공급 집중도, (d) 가치사슬의 여러 단계에서의 EU 및 글로벌 생산 및 생산능력 지표의 진전을 포함해야 함<sup>127)</sup>
- 유럽원자재이사회 상임 소그룹에 참여하는 국가 당국은 앞에 언급된 모니터링에 있어 상술한 지표의 진전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공유와 그러한 지표의 진전에 비추어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 위험에 대한 분석의 제공 등을 통해 집행위원회를 지원해야 함<sup>128)</sup>

124) CRMA안 제16조제4항.

125) CRMA안 제18조제1항.

126) CRMA안 제18조제2항.

127) CRMA안 제19조제1항.

128) CRMA안 제19조제2항

- 집행위원회는 유럽원자재이사회 상임 소그룹에 참여하는 국가 당국과 협력하여 각 전략 원자재의 공급망에 대해 최소 3년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스트레스 테스트는 관련 전략 원자재에 대한 연합의 공급망 취약성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는데, 공급 중단을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별 영향과 그 잠재적 영향을 추정하여 공급 중단을 평가함<sup>129)</sup>

#### (2) 회원국의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 제공 의무

- 회원국은 제19조제1항제(d)호와 관련된 자국 영토 내 신규 또는 기존 원자재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하고, 자국 영토에 구축된 핵심 원자재 가치사슬을 따라 주요 시장 사업자를 확인해 주어야 함<sup>130)</sup>

#### (3) 전략적 재고 보고

- 회원국은 전략 원자재의 전략적 재고(strategic stocks) 상태에 대한 정보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동 정보는 회원국을 대신하여 전략물자를 비축하도록 회원국에 의해 부과된 모든 공공 기관, 공기업 또는 경제사업자가 보유한 재고를 포함해야 함. 더불어 (i) 각 전략 원자재에 대한 재고 수준(톤 단위 및 해당 원자재의 연간 국가 소비량 대비 백분율로 측정), (ii) 지난 5년 동안 각 전략 원자재에 대해 이용 가능한 재고 수준의 변화, (iii) 전략 원자재의 방출, 할당 및 분배에 적용되는 모든 규칙 또는 절차도 포함해야 함<sup>131)</sup>
- 동 보고에는 핵심 원자재 및 기타 원자재의 전략적 재고에 대한 정보도 포함할 수 있음<sup>132)</sup>

#### (4) 전략적 재고의 조정

-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의 견해를 고려하여 전략 원자재의 EU 재고의 안전한 수준을 나타내는 벤치마크를 채택하여야 하는데, 이는 (i) 공급 중단 시 일일 평균 순 수입량 일수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양으로 표시되며, 전년도 수입량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ii) 해당 재고에 대한

129) CRMA안 제19조제3항.

130) CRMA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131) CRMA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132) CRMA안 제21조제3항.

정보가 입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간 사업자가 보유한 재고를 고려해야 하며, (iii) 해당 전략 원자재와 관련된 공급 위험 및 경제적 중요성에 비례해야 함<sup>133)</sup>

-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의 견해를 고려하여 회원국에게 회원국 간 기존 재고의 상대적 분포 및 회원국의 각 영역 내 경제사업자의 전략 원자재 소비를 고려하여 전략 재고 수준을 높이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sup>134)</sup>

#### (5) 기업의 리스크 대비

- 회원국은 자국 영토에서 전략 원자재를 사용하여 '전략 기술'을 제조하는 대기업을 확인해야 함. '전략 기술(Strategic technologies)'에는 에너지 저장 및 e-모빌리티용 배터리, 수소 생산 및 활용 관련 장비, 재생 에너지 발전 관련 장비, 견인 모터, 히트 펌프, 데이터 전송 및 저장, 모바일 전자 기기, 적층 제조 관련 장비, 로봇 공학, 드론, 로켓 발사기, 위성 및 첨단 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sup>135)</sup>
- 회원국이 확인한 대기업을 2년마다 (i) 사용하는 전략 원자재가 어디에서 추출, 가공 또는 재활용되는지에 대한 지도 제작과 (ii) 최소한 규칙안 제19조제3항에 열거된 요소를 고려하여 공급 중단을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별 영향과 그 잠재적 영향을 추정하여 공급 중단에 대한 취약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구성된 전략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포함하여 공급망에 대한 감사를 수행해야 함<sup>136)</sup>

#### (6) 공동 조달

- 집행위원회는 연합에 설립된 전략 원자재를 소비하는 이해관계 사업체와 전략 비축을 담당하는 회원국 당국의 수요를 집계하고, 집계된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자의 제안을 구하는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야 함. 여기에는 가공되지 않은 전략 원자재와 가공된 전략 원자재가 모두 포함됨<sup>137)</sup>

133) CRMA안 제22조제2항.

134) CRMA안 제22조제3항.

135) CRMA안 제23조제1항

136) CRMA안 제23조제2항.

137) CRMA안 제24조제1항.

- 언급된 시스템에 대한 참여는 EU 내에서 설립된 모든 이해관계 사업체와 회원국 당국에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sup>138)</sup>
- 언급된 시스템에 참여하는 EU 사업체 및 회원국 당국은 공급업체와 더 나은 조건을 달성하거나 공급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투명한 기준으로 구매 계약의 가격 또는 기타 조건을 포함하여 구매를 공동으로 협상하거나 공동 구매를 이용할 수 있음. 참여 EU 사업 및 회원국 당국은 EU 경쟁법을 포함한 연합법을 준수해야 함<sup>139)</sup>

## 4. 지속 가능성

### (1) 순환성 보장 관련 조치

#### (i) 순환성에 대한 회원국의 조치

- 각 회원국은 이 규칙 발효일로부터 3년 후까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하는 국가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이행해야 함
  - (a) 핵심 원자재 재활용 시설에 투입되는 재활용 가능 물질의 가용성과 품질을 극대화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 회수 가능성이 높은 폐기물의 수거를 늘리고 적절한 재활용 시스템에 도입되도록 보장할 것;
  - (b) 핵심 원자재 회수 잠재력이 높은 제품 및 구성품의 재사용을 늘릴 것;
  - (c) 적절한 경우 공공 조달과 관련된 판정 기준에 재활용 함량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조에 있어 2차 핵심 원자재 사용을 늘릴 것;
  - (d) 핵심 원자재 재활용 기술의 기술적 성숙도를 높이고, 적어도 국가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에 이러한 효과를 위한 지원 조치를 포함시킴으로써 재료 효율성 및 응용 분야에서 핵심 원자재 대체를 촉진할 것;
  - (e) 회원국의 인력이 핵심 원자재 가치사슬의 순환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도록 보장할 것<sup>140)</sup>

138) CRMA안 제24조제3항.

139) CRMA안 제24조제4항.

140) CRMA안 제25조제1항.

## (ii) 추출 폐기물로부터 핵심 원자재 회수

- 지침 2006/21/EC 제5조에 따라 폐기물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지침 2006/21/EC 제3조에 정의된 대로 관할 당국에 (a) 시설에 저장된 추출 폐기물과 (b) 발생 중인 추출 폐기물 또는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폐기물이 되기 전에 추출된 양으로부터 핵심 원자재의 잠재적 회수에 관한 예비 경제성 평가서(preliminary economic assessment study)를 제출할 의무를 가짐<sup>141)</sup>
- 동 평가서에는 최소한 추출된 폐기물 및 추출된 양에 포함된 핵심 원자재의 양과 농도의 추정치와 이의 기술적 및 경제적 회수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함<sup>142)</sup>

## (iii) 영구자석의 재활용성(recyclability)

- 자기 공명 영상 장치, 풍력 에너지 발전기, 산업용 로봇, 자동차, 경량 운송 수단, 냉각 발전기, 히트 펌프, 전기 모터(다른 제품에 포함된 경우 포함), 자동 세탁기, 회전식 건조기, 전자 레인지, 진공 청소기 또는 식기 세척기를 시장에 출시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그러한 제품이 (a) 그러한 제품에 하나 이상의 영구 자석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b) 동 제품에 하나 이상의 영구 자석이 포함된 경우, 해당 자석이 "네오디뮴-철-붕소", "사마륨-코발트", "알루미늄-니켈-코발트" 또는 "페라이트" 중 하나에 속하는지 여부를 명시한 눈에 잘 띄고 명확하게 읽을 수 있으며 지워지지 않는 라벨을 부착해야 함<sup>143)</sup>
- 집행위원회는 상기 라벨링의 형식을 설정하는 시행령을 채택해야 함<sup>144)</sup>
- 상기한 유형의 영구 자석이 하나 이상 포함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데이터 캐리어(data carrier)가 해당 제품 위에 또는 제품 내에 존치되도록 보장해야 함<sup>145)</sup>
- 제3항에 언급된 데이터 운송업체는 다음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고유한 제품 식별표(product identifier)에 연결되어야 하는데, (a) 책임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이름, 등록상호 또는 등록상표, 우편 주소 및 가능한 경우 연락할 수 있는 전자적 통신 수단; (b) 제품에 포함된 모든 개별 영구 자석의 무게, 위치 및 화학 성분, 사용된 자석 코팅,

141) CRMA안 제26조제1항.

142) CRMA안 제26조제2항.

143) CRMA안 제27조제1항.

144) CRMA안 제27조제2항.

145) CRMA안 제27조제3항.



접착제 및 첨가제의 유무와 유형에 대한 정보; (c) 제품에 포함된 모든 영구 자석의 접근 및 제거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 등이 그러함<sup>146)</sup>

- 제3항에 언급된 정보는 완전하고 최신이며 정확해야 하고, 책임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파산, 청산 또는 EU 활동 중단 이후를 포함하여 최소한 상품의 통상적인 수명에 10년을 더한 기간 동안 제공되어야 함<sup>147)</sup>

#### (iv) 영구자석의 재활용 내용물

- 규칙안에 언급된 하나 이상의 영구 자석이 포함하고 그러한 모든 영구 자석의 총 중량이 0.2kg을 초과하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당해 제품에 포함된 영구 자석에 함유된 '소비 후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프라세오디뮴, 테르븀, 붕소, 사마륨, 니켈 및 코발트 비율을 무료 접근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알 수 있게 하여야 함<sup>148)</sup>

## (2) 인증 및 환경발자국

### (i) 인정제도

- 핵심 원자재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인증 제도(certification schemes)를 개발하고 감독하는 정부 또는 단체(제도 운영자)는 집행위원회에 해당 제도를 인정해 주도록 신청할 수 있음. 집행위원회는 제출된 증거에 근거하여 당해 인증 제도가 부속서 IV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제도에 대한 "인정(recognition)"을 부여하는 이행법을 채택하여야 함. 집행위원회는 인정된 제도가 부록 IV에 명시된 기준을 계속 충족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함<sup>149)</sup>
- 인정받은 제도의 운영자는 인정받은 제도에 대한 변경 또는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집행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집행위원회는 그러한 변경 또는 업데이트가 인정의 근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또한 인정 제도를 실시하는 경제사업자가 해당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사례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인정 제도의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당 사례가

146) CRMA안 제27조제4항.

147) CRMA안 제27조제7항.

148) CRMA안 제28조제1항.

149) CRMA안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

인정의 근거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결함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sup>150)</sup>

#### (ii) 환경발자국 선언

- 집행위원회는 부록 V에 따라 과학적으로 건전한 평가 방법 및 관련 국제 표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핵심 원자재의 환경발자국 산정 및 검증 규칙을 수립함으로써 이 규칙을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산정 및 검증 규칙은 가장 중요한 영향 범주를 식별해야 함. 발자국 신고는 해당 영향 범주로 제한되어야 함<sup>151)</sup>
- 집행위원회는 다양한 관련 환경 영향 범주를 고려한 결과, 특정 핵심 원자재가 상당한 환경발자국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보다 낮은 환경발자국을 가진 핵심 원자재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연합의 기후 및 환경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핵심 원자재를 시장에 출시할 때 가장 중요한 영향 범주에 대한 당해 원자재의 환경발자국을 선언할 의무가 필요하고 비례적이라고 결론을 내린 경우, 당해 특정 핵심 원자재에 대한 산정 및 검증 규칙을 채택할 수 있음<sup>152)</sup>

### (3) 자유로운 이동, 적합성 및 시장감시

#### (i) 자유로운 이동

- 회원국은 영구 자석의 재활용 또는 재활용 콘텐츠에 대한 정보 또는 이 규칙이 적용되는 핵심 원자재의 환경발자국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이유로 영구 자석 또는 이 규칙을 준수하는 핵심 원자재가 포함된 제품의 시장 출시 또는 서비스 투입을 금지, 제한 또는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자유로운 이동에 대해 규정함<sup>153)</sup>

#### (ii) 적합성 평가 절차 완료

- 제27조 또는 제28조에 해당하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책임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해당 적합성 평가 절차가 수행되었을 것과 필요한 기술 문서가 작성되었을 것을 보장해야 함. 적합성 평가 절차를 통해 제품이 해당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입증된

150) CRMA안 제29조제4항 및 제5항.

151) CRMA안 제30조제1항.

152) CRMA안 제30조제2항.

153) CRMA안 제31조제1항.

경우, 책임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EU 적합성 선언(EU declaration on conformity)을 작성하고 CE 마크를 부착해야 함<sup>154)</sup>

(iii) 시장감시

- 시장 감시와 관련하여 에코디자인 요건 등에 관한 제반 EU 규칙의 관련 규정이 적용됨<sup>155)</sup>

## 5. 전략적 파트너십

- 유럽핵심원자재이사회는 주기적으로 다음을 논의하여야 함<sup>156)</sup>
  - (i) 연합이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연합의 공급안정성 향상, 제1조제2항제(b)호에 명시된 벤치마크 및 핵심 원자재 가치사실에 따른 협력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
  - (ii) 회원국과 관련 제3국과의 양자협력과 전략적 파트너십의 맥락에서 연합이 수행하는 조치 간의 일관성 및 잠재적 시너지 효과
  - (iii) 공급 안보에 대한 잠재적 기여도, 제3국의 잠재적 매장량, 추출, 가공 및 재활용능력 또는 신흥시장의 경우~ 체결을 위한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
- 유럽핵심원자재이사회는 제1항의 맥락에서 그리고 신흥 시장 및 개발도상국과 관련된, 글로벌 게이트웨이 전략의 일환으로 설립된 포럼을 포함하여 기타 관련 조정 포럼과의 협력을 보장해야 함<sup>157)</sup>
- 회원국은 (i) 관련 제3국과의 양자 협력과 EU 제3국과의 구속력 없는 전략적 파트너십 (최소한 핵심 원자재 가치사슬을 포함하는 범위) 간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집행 위원회와 조율하고, (ii) 전략적 파트너십에 명시된 협력 조치의 이행에 있어 집행위원회를 지원해야 함<sup>158)</sup>

154) CRMA안 제32조제1항.

155) CRMA안 제3조제4항.

156) CRMA안 제33조제1항.

157) CRMA안 제33조제2항.

158) CRMA안 제33조제3항.

## 6.

## 벌칙 등

## (1) 벌칙

- 회원국은 본 규칙 발효 후 12개월까지 본 규칙 위반에 적용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 규정된 벌칙은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설득력이 있어야 함. 회원국은 지체없이 해당 법규와 조치를 집행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법규에 영향을 미치는 후속 개정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함<sup>159)</sup>

## (2) 기밀정보의 취급

- 본 규칙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본 규칙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관련 EU 및 국내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함. 회원국과 집행위원회는 EU 및 해당 국내법에 따라 취해야 할 권고 및 조치를 포함하여 본 규칙의 적용 과정에서 취득 및 생성된 영업 및 거래 비밀, 기타 민감한 기밀 및 비밀 정보의 보호를 보장해야 함. 또한 회원국과 집행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제공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가 정보 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비밀 등급이 하향 조정되거나 비밀이 해제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sup>160)</sup>
- 회원국은 제21조의 맥락에서 수집된 정보의 발표가 자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경우, 정당한 통지를 통해 집행위원회의 발표에 이익을 제기할 수 있음<sup>161)</sup>
- 한편, 유럽핵심원자재이사회도 기밀 및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안전한 취급 및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162)</sup>

## (3) 모니터링의 진전 상황

-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의 조언을 고려하여 제2조제2항에 명시된 목표에 대한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적어도 3년마다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연합의 진전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행해야 함. 동 보고서에는 제2조제2항에 명시된 벤치마크에 대한 연합의 진전 정도에 대한 정량적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sup>163)</sup>

159) CRMA안 제45조.

160) CRMA안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

161) CRMA안 제44조제4항.

162) CRMA안 제35조제8항.

163) CRMA안 제42조.

## V 평가와 전망 및 시사점

- 먼저 EU 내에서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발의된 EU의 SMEI규칙안과 CRMA안에 대한 평가에 앞서 양 규칙안 간의 관계를 설명하면, SMEI규칙안의 경우 단일시장 및 공급망의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예기치 못한 수급상 위기에 대한 대응을 주된 목적으로 도입된 입법인 관계로 그 규율 대상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비해 CRMA안은 전략적 중요성이 크거나 경제적 중요성이 높은 전략 원자재 및 핵심 원자재를 대상으로 이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 대응 입법이라는 점에서 기본적 차이가 있음. 환언하면, SMEI규칙안은 수급상 위기에 대한 대응 메카니즘이라면, CRMA안은 선정된 소수의 전략 및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대응 메카니즘이라 할 수 있음

### 1. EU SMEI 규칙안 및 부수 입법안 관련

- EU의 SMEI규칙안은 (i) 위기 시 단일시장의 기능 보장 관점에서의 조치와 (ii) 위기 관련 재화 및 서비스 부족에의 대응조치의 두가지 측면에 대한 대처라는 두가지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 관점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SMEI규칙안의 후자의 조치에 초점을 맞춰 평가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1) 도입 배경 측면

- **(EU의 도입 배경 측면)** EU에는 일반적인 위기 관리를 규율하는 수평적인 위기 대응 메카니즘에 관한 여러 입법이 있었고, 단일시장의 특정 측면(상품의 수출 또는 공공 조달 등)의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 특정적인 조치들과 특정 부문(금융서비스, 의료, 식품 안전 제품 등)에서의 위기관리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 등도 갖고 있었음. 그러나 COVID-19

팬데믹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최근의 위기는, 예기치 않은 혼란이 발생할 경우 단일시장과 그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냈음. 더욱이 미래에는 지정학적 불안정성, 기후 변화 및 그로 인한 자연재해 외에도 생물 다양성 손실과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또 다른 새로운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 대응 프레임워크의 수립이 필요하였고, 그 결과가 바로 SMEI규칙안이라 할 수 있음

- **(우리의 경우)** COVID-19 팬데믹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예기치 않은 사태로 인한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위기 상황은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니며, 우리는 특히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발생 가능성이 적지 않아 EU의 SMEI규칙안과 같은 공급망 위기 대응 프레임워크의 마련이 요구됨

## (2) SMEI규칙안의 공급망 위기 대응 메커니즘의 특징

### (i) 규율 대상 관련 현행 위기 대응 조치에 대한 보완적 성격

- 금번 SMEI규칙안에 명시된 조치는 위기가 단일시장 및 공급망의 기능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점에서 규율 대상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음. 다만, 동 규칙안은 각기 별도의 EU 규칙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반도체, 에너지 제품과 금융서비스 등 특정 측면이나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위기 대응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보완적 성격을 가짐

### (ii) 3단계 모드별 위기 대응조치 수립

- 금번 SMEI규칙안에 명시된 조치는 위기가 단일시장 및 공급망의 기능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점에서 규율 대상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음. 다만, 동 규칙안은 각기 별도의 EU 규칙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반도체, 에너지 제품과 금융서비스 등 특정 측면이나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위기 대응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보완적 성격을 가짐
- SMEI규칙안의 위기 대응 메커니즘은 첫째, 대응조치를 평시, 경계 및 비상 상황 등 3단계의 모드별로 구분하여 대응조치를 규정하고 있음이 주목됨. 여기서 (a) “위기”라 함은 EU 내부 또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성격과 규모의 예외적으로 예상하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자연적 또는 사람이 만든 사태를 가리키고, (b) “경계 모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에 중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향후 6개월 이내에 단일시장 비상 상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틀을 가리키며, (c) "단일시장 비상 상황"이라는 단일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이나 단일시장의 필수적인 사회 또는 경제 활동의 유지에 불가결한 그러한 공급망의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그러한 위기가 단일시장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의미함

(iii) 의무적 조치, 비의무적 조치 및 혼합적 성격의 조치 등 다단계 대응 수단 규정

- 각 모드의 대응 과제별 구체적인 위기 대응조치를 살펴보면, (a) 투명성 제고 등 비규범적 조치와 (b) 의무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규범적 조치 그리고 (c) 양자의 중간적 내지 혼합적 성격을 가진 협력 조치 등 3가지 형태의 정책적 대응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바, 3단계별로 규정된 대응 수단을 그 성격에 따라 구분해 제시하면 다음의 <표 7>과 같음

<표 7> EU SMEI규칙안에 따른 위기 모드의 대응 분야별 주요 대응 조치

위기 단계	대응 분야	위기 대응 조치
		(A형) 투명성 조치, (B형) 협력조치, (C형) 규범조치
평시 모드	거버넌스, 조정, 협력	(B형) 기술 수준의 포럼으로서 자문그룹 구성; 위기 예상 및 위기 상황 정보 공유
	위기대응 계획	(B형) 위기 프로토콜 관리; 훈련 및 시뮬레이션 (C형) 회원국은 공급망 기능에 중대하게 혼란을 초래하거나 중대하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태를 지체없이 통보할 의무
경계 모드	경계조치	(B형) 집행위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에 대한 전략 비축량을 구축하도록 회원국에 권고
		(C형) 회원국은 경계 모드를 발동하는 이행법에서 확인된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망 정보수집 등 모니터링할 의무; 회원국은 전략 비축량이 목표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에 대한 전략 비축량을 구축할 의무; 집행위는 전략 비축 목표가 포함된 목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의무 등

위기 단계	대응 분야	위기 대응 조치
		(A형) 투명성 조치, (B형) 협력조치, (C형) 규범조치
비상 상황 모드	자유이동 복귀 및 촉진조치	(B형) 위기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역내 수출 금지나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기타 조치 도입 자제 등 (C형) 회원국은 해당 조치가 발효되기 전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 (근로자 및 서비스 제공자 포함)에게 상품, 서비스 및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투명성 및 행정지원	(C형) 단일시장 비상 상황 동안 회원국은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서비스 공급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기 관련 조치를 이유와 함께 집행위에 통보할 의무
	위기 관련 상품의 특정 정보 요청 및 가용성 확보 조치	(A형) 경제사업자에게 위기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권고 (B형) 심각한 위기 관련 (공급)부족이나 이의 즉각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위기 관련 공급망의 대표단체나 경제사업자들로 하여금 (i) 관련 공급망 혼란에 대한 정보를 주어진 기한 내에 집행위원회에 전달하거나 (ii) EU 내 생산 시설과 상기 대표단체나 경제사업자가 운영하거나, 계약하거나 또는 공급을 구매하는 제3국 시설에서의 위기 관련 상품 및 그 부품의 생산능력과 가능한 기존 재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전달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국이 조성한 전략적 비축량이 단일시장 비상 상황과 관련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전략비축물자를 분배하도록 회원국에 권고할 수 있음</li> <li>■ 집행위는 의무 정보 요청 응답 의무나 우선처리 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자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li> </ul> (C형) 회원국은 이전에 비축한 물자를 방출하고, 허가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사업자는 위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 역량을 확대하며, 위기 관련 상품의 주문을 우선 처리할 의무</li> </ul>
	위기 관련 상품의 적합성평가 절차 예외 조치	(B형) 비상 상황에서 지정된 위기 관련 상품의 시장 출시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적합성 평가 절차를 완화하여 긴급 절차를 적용하고, 적합성 평가를 우선 처리하며, 통고기관의 의무적 관여를 요구하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수가 면제될 수 있고, 적합성 추정을 부여하는 공동 사양을 채택할 수 있음



위기 단계	대응 분야	위기 대응 조치
		(A형) 투명성 조치, (B형) 협력조치, (C형) 규범조치
비상 상황 모드	조달	(B형)비상 상황 모드 기간중 회원국을 대신한 집행위원회의 전략적 중요 상품 및 서비스와 위기 관련 상품의 조달(회원국의 자산을 대신한 집행위원회에의 상품 및 서비스의 조달 요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 상황 모드 기간중 공동 조달</li> </ul>

출처: 전계 자료(각주1), 11-12쪽 <박스 자료>를 기초로 필자가 재정리

(iv)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대응

- 비상 상황시 취하는 위기 관련 상품의 특정 정보 요청 및 가용성 확보 조치의 경우 먼저 자발적인 정보 제공이나 우선 주문 처리를 요청하지만, 사업자가 그러한 고의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한내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주문을 우선 처리하기로 수락한 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대응을 도입하고 있음<sup>164)</sup>

(3) 전망

- 집행위원회의 SMEI규칙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와의 3자간 협의를 거쳐 EU 의회 및 이사회에서의 표결을 통해 채택되면, 이후 EU 관보에 게재되고 발효하게 됨
- **(EU 의회 입장)** 2023.3월 제시된 EU 의회의 고용사회분과위원회가 작성한 집행위원회의 SMEI규칙안에 대한 개정 의견안에 따르면, SMEI규칙안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해 파업권과 같은 회원국 및 EU 차원에서 인정된 기본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될 것과 교섭권이나 집단계약을 체결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개정안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이 SMEI규칙안에 따른 긴급조치로 인한 노동자 권리에 대한 제약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들이어서 통과에 달리 어려움은 없어 보임
- **(이사회 및 회원국 등의 의견)** 이에 대해 EU 회원국 장관들은 SMEI 초안이 발표되자 동 초안이 집행위원회에게 핵심 공급망의 모니터링과 회원국에 대한 전략적 비축 설정 그리고 비상 상황시 경제사업자에게 우선 처리 주문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긴급조치 권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조건과 제한을 요구하였음. 에스토니아

164) 전계 자료(각주 1), 7쪽.

기업 및 정보 기술 장관은 “우리는 기업들에게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제출하도록 추가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이는 단지 우리의 경쟁력과 위기에 대처할 우리의 역량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등 일부 회원국은 SMEI규칙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출하였음. 또한 EU 이사회는 2023년 1월 중요 제품의 비축 명령권 등 일부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동 규칙안의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하였음. EU 이사회 법률자문기구인 EU 법제실(EU Council’s Legal Services, CLS)도 2023년 4월에 SMEI규칙안 가운데 각 회원국에 대한 전략적 비축 의무 부과, 경제사업자에 대한 위기대응 물품 재고와 생산 역량 등에 관한 정보 제출 요구 및 특정 물품의 우선 주문 처리[생산] 요구 등은 EU법에 기한 집행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EU법에 위반된다는 법률 의견을 발표하였음

- **(집행위원회의 반론)** Thierry Breton 집행위 위원은 집행위원회 제안이 일본, 한국이나 미국과 같은 국가들에 비해 훨씬 개입이 적은 것임을 지적하면서 SMEI규칙안의 비상 상황 모드는 집행위원회가 아닌 이사회에 의해서만 발동될 수 있음을 환기하였음
- 따라서 집행위원회가 공표한 SMEI규칙안은 EU 의회와 이사회와의 3자 협의 과정에서 집행위원회의 긴급조치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고, SMEI규칙안에 따른 긴급조치 권한을 상당 부분 완화하는 개정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임

#### (4) 평가 및 제언

- SMEI규칙안의 공급망 위기 대응 메카니즘에서는 상황을 평시, 경계 및 비상 상황으로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대응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우 적절한 대응체계라 평가되고, 따라서 향후 우리의 공급망 안정화 입법에서도 3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입안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더불어 SMEI규칙안의 3단계별 제안된 대응조치는 전반적으로 적절해 보이나, EU의 단일시장 특성을 반영하는 자유이동에 관한 조치 등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으로 보임
- 금번 SMEI규칙안의 대응조치 가운데 향후 우리의 유사 입법시 논란 가능성이 있는 조치로는 비상 상황시의 사업자에 대한 정보 요청과 우선 처리 명령이 될 것임. 두가지 조치 모두 비상대응조치로서 필요하고 유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우리의 입법에서는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정보 제공 요구 등이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SME티규칙안에서는 공급망 위기 대응조치의 하나로서 통일(규격)제품입법의 특정 개정을 규정하고 있음이 주목되는바, 이는 공급망 위기 대응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적합성평가 절차의 적용에 있어 우선 처리 대우, 적합성 평가 절차에서 통고기관의 의무적 관여 면제, 국가 및 국제표준에 기한 적합성 추정 등 시험인증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적용 예외 근거를 도입하고 있음이 매우 주목됨. 이는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제약적 상황에 비추어 우리 역시 유사한 예외 규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2.

### EU CRMA안 관련

#### (1) 핵심 원자재의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한 대응 필요

- **(EU의 도입 배경 측면)** EU는 마그네슘, 니켈 등 많은 주요 원자재를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이러한 수입은 추출 및 가공 단계 모두에서 중국 등 소수의 제3국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집중도는 EU를 심각한 공급 위험에 노출시키게 됨. 그런데, 이러한 핵심 원자재는 재생 에너지, 디지털 산업, 우주 및 방위 부문, 보건 부문을 포함한 광범위한 전략적 부문에 필수적인 투입물이어서 이러한 핵심 원자재의 소수 제3국에의 구조적인 높은 공급 의존도는 위기시 그러한 핵심 원자재 수급에 있어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 실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촉발된 가스 공급 차단으로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었음. 이와 관련 EU는 2008년 원자재 이니셔티브, 2013년 유럽 원자재 혁신 파트너십 등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여 왔지만, 그러한 비규제 조치만(Non-regulatory actions)으로는 EU가 핵심 원자재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A secure and sustainable supply)에의 접근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함. 이러한 배경 및 인식에서 핵심 원자재 전반에 걸쳐 공급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제 프레임워크(Regulatory framework)의 부재로 인한 위기 대응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금번 CRMA안을 공표하게 되었음
- **(우리의 사정)** 국내 핵심원자재는 전반적으로 특정국 편중도가 높으며 취약성이 높은 품목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한 경제안보 환경하에서 한중 관계가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국내 주요 수입품목인 리튬, 코발트, 망간의 경우 對 중국 의존도가 높는데 대체 후보국이 없어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우리의 경우 핵심 원자재의 공급안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 도입이 긴요한 상황이라 보아야 할 것임

(2) 대상 원자재의 범위 및 선정

- 다음으로 공급망 안정화 법안의 대상 핵심 원자재의 범위는 무엇이며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됨. 이와 관련 CRMA안에서는 (i) 평가된 원자재 중에서 전략적 중요성, 예상 수요 증가율 및 생산 증가 난이도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원자재를 가리키는 “전략 원자재”와 (ii)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 위험에 대한 기준치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는 기타 원자재를 가리키는 “핵심 원자재”의 두 개 카테고리 구분하여 규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집행위원회가 법안 발효 후 4년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매 4년마다 전략 원자재 및 핵심 원자재의 리스트를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있음
- 공급망 안정성 확보 대상 원자재를 (i) 전략적 중요성과 (ii) 경제적 중요성 및 공급 위험의 두가지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되는바, 그 이유는 전자의 경우 첨단산업 원자재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필요하고, 후자는 범용재라 할지라도 그 수급이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원자재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준이기 때문임. 또한 CRMA안에서는 대상 원자재의 공급망 안정성을 위한 대응조치의 내용에 따라 그 적용 대상을 전략 원자재와 핵심 원자재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기도 함. 가령, 핵심 원자재에 대해서는 공급 위험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전략 원자재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이 그러함<sup>165)</sup>

〈표 8〉 CRMA안에 따른 2023년 핵심 원자재와 전략 원자재 목록 개요

구분	대상 주요 원자재
핵심 원자재: 경제적 중요도가 높고 공급위험도가 임계값에 가깝거나 초과한 원자재	안티모니, 보크사이트, 중정석, 베릴륨, 비스무트, 붕소, 코발트, 점결탄, 형석, 갈륨, 게르마늄, 하프늄, 중희토류, 경희토류, 리튬, 마그네슘, 천연흑연, 니오븀, 인암, 인, 백금족, 스칸듐, 금속규소, 스트론튬, 탄탈럼, 티타늄, 텅스텐, 바나듐, 비소, 헬륨, 망간, 장석, 구리, 니켈(배터리 등급)* 등 총 34개 * 기존 2020년 핵심원자재 목록에서 6개 원자재가 신규 추가되고 인듐, 천연고무는 제외됨. 신규 추가 원자재 중 구리와 니켈은 공급 위험도는 낮으나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전략원자재로 선정되며 핵심원자재에 포함

165) CRMA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구분	대상 주요 원자재
전략 원자재: 전략적 중요도가 높고, 미래 수요와 글로벌 공급 간 격차가 크며 생산량 증가 난이도가 큰 원자재	비스무트, 붕소(금속급), 코발트, 구리, 갈륨, 게르마늄, 리튬(배터리 등급), 마그네슘메탈, 망간(배터리 등급), 천연흑연(배터리 등급), 니켈(배터리 등급), 백금족, 영구자석용 희토류(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테르븀, 디스프로슘, 가돌리늄, 사마륨, 세륨), 금속규소, 티타늄, 텅스텐 등 총 16개

출처: 윤용희, EU의 핵심원자재법 살펴보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23. 4. 6.자.

- 생각건대, 전략 원자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속적 대응이 필요에 보임에 비해 핵심 원자재는 시기 및 상황에 따라 대응 필요가 가변적일 수 있는 성격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우리의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에서도 CRMA안에서와 같이 전략 원자재와 핵심 원자재의 개념을 구분하여 도입하고, 그 대응조치에 있어 양자간 성격을 반영한 필요가 있어 보이며, 양자 모두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대상 리스트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응 메카니즘

-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CRMA안에 따른 대응 메카니즘은 크게 (i) 리스크 모니터링, (ii)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 (iii)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및 (iv) 핵심 원자재의 순환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i) 리스크 모니터링

-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 위험 모니터링)** CRMA안에서는 집행위원회가 핵심 원자재와 관련된 공급 위험을 모니터링하도록 하며, 모니터링은 최소한 (a) 무역 흐름, (b) 수요 및 공급, (c) 공급 집중도, (d) 가치사슬의 여러 단계에서의 EU 자체와 글로벌 생산 및 생산능력 지표의 변화를 포함하도록 규정함
- **(전략 원자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각 전략 원자재의 EU 공급망 취약성을 공급 중단을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별 영향과 그 잠재적 영향을 추정하여 공급 중단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s)를 최소 3년마다 수행하도록 규정함
- **(모니터링을 위한 회원국의 정보 제공 의무)** 자국 영토 내 원자재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함

- **(전략적 재고 보고)** 회원국은 전략 원자재와 필요시 핵심 원자재의 전략적 재고 상태에 대한 정보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전략적 재고의 안전 수준 기준 채택 및 조정)** 전략 원자재의 EU 재고의 안전한 수준을 나타내는 기준(Benchmark)을 채택하고, 각 회원국 내 경제사업자의 전략 원자재 소비 등을 고려하여 전략 재고 수준을 조정함
- **(기업의 리스크 대비를 위한 전략 원자재 공급망 지도 제작과 공급망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회원국은 자국 영토에서 전략 원자재를 사용하여 '전략기술'을 제조하는 대기업을 확인하고, 확인된 대기업을 2년마다 (a) 사용하는 전략 원자재가 어디에서 추출, 가공 또는 재활용되는지에 대한 지도 제작과 (b) 공급 중단을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별 영향과 그 잠재적 영향을 추정하여 공급 중단에 대한 취약성을 평가하는 전략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포함한 공급망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 **(평가 및 제언)** 공급망 위험 원자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응에 있어 대상 원자재별로 국내 최종 수요처와 수요량 등을 포함한 물자 흐름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이 점에서 CRMA안에서 규정한 핵심 원자재의 공급 위험 모니터링과 전략 원자재의 스트레스 테스트의 주기별 시행은 우리의 공급망 안정화 법안에서도 반드시 필요할 것임
  - 이를 기초로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핵심 원자재의 전략적 재고의 안전 수준 기준을 설정하여 일정한 전략적 재고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 차원에서도 대상 원자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의 사전적 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CRMA안에서와 달리 핵심 기술 관련 전략 원자재 공급망 지도 제작의 경우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작성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임
  - 참고로 우리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수입협회 웹페이지에서 일일 단위 국제 원자재가격을 공시하고 있고, 2021년 요소수 사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와 외교부 경제안보 외교센터에서 공급망 핵심 품목에 대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음. 이밖에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주요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지도 제작 작업을 수행중에 있음

## (ii)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

- **(전략 프로젝트 인정 및 실행)** CRMA안에서는 집행위원회가 EU의 전략 원자재 공급의 안보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과 프로젝트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한 것 등을 충족하는 원자재 프로젝트를 '전략 프로젝트'로 인정하고 회원국은 동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실행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전략 프로젝트를 위한 허가 절차는 가장 신속히 처리하고 환경영향 평가도 30일 안에 처리하도록 규정함
- **(전략 프로젝트 촉진을 위한 자금조달 조정 및 장기구매계약 실시 등)** 전략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추진자의 요청에 따라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 조언하며, 장기구매계약(Off-take agreement)의 체결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할 뿐 직접적인 자금조달규칙이나 재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평가 및 제언)** 핵심 또는 전략 원자재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수요국이 해당 원자재의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것임. 따라서 우리의 공급망 안정화법에서도 CRMA안을 참조하여 핵심 원자재 등의 자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도입을 강구해야 할 것임. 이와 관련 핵심 원자재의 가공난이도, 재고관리 주기, 운송방식, 환경 부담 등 특성에 따른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sup>166)</sup>
  - (i) 역외 가공·운송이 유리한 자원의 경우 해외 자원개발 및 가공 자금을 지원하고,
  - (ii) 수급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 해외 자원 장기구매계약(Off-take agreement)을 지원하며,
  - (iii) 원광 수입이 쉽고 가공 단계의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은 국내 생산·가공기지 건설 자금을 지원하고, 국내 재자원화(재활용) 관련 시설 자금 지원을 통한 자원 수급 유연성을 확보하며,
  - (iv) 국내외 물류 인프라 및 서비스 확보 지원과 해외 소부장 신뢰가치사슬(Trusted value chain, TVC) 및 역내가치사슬(Regional value chain, RVC)<sup>167)</sup>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 등

166) 2023 Issue Report: 무역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주요 산업별 핵심원자재 공급망 취약성 분석, 2023, 55쪽.

167) TVC는 신뢰가능한 우방국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가리키고, RVC는 권역 내 인접국과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가리킴.

## (iii)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CRMA안에서는 유럽핵심원자재이사회로 하여금 EU의 공급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3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 우리의 경우 핵심 광물의 자급률이 극히 취약할 뿐만 아니라 그 수입원의 대부분이 특정국에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 따라서 우리의 경우 특히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주요 원자재와 관련한 정보 공유와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 Security Partnership)”<sup>168)</sup>, “유럽원자재동맹(European Raw Materials Alliance)”<sup>169)</sup> 또는 “EU-미-일 3각 핵심원자재회의(Trilateral EU-US-Japan Conference on Critical Materials)”<sup>170)</sup> 등과 같은 원자재 국제협력체계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 (iv) 핵심 원자재의 순환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 **(핵심 원자재의 순환성 제고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 채택 및 이행)** CRMA안에서는 각 회원국이 동 규칙 발효일로부터 3년 후까지 (a) 핵심 원자재 회수 가능성이 높은 폐기물의 수거를 늘리고 적절한 재활용 시스템에 도입되도록 보장할 것; (b) 핵심 원자재 회수 잠재력이 높은 제품 및 구성품의 재사용을 늘릴 것; (c) 제조에 있어 2차 핵심 원자재 사용을 늘릴 것; (d) 재료 효율성 및 응용 분야에서 핵심 원자재 대체를 촉진할 것; (e) 회원국 인력이 핵심 원자재 가치사슬의 순환성(Circularity)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도록 보장할 것 등의 조치를 포함하는 국가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함
- **(추출 폐기물 회수 관련 사업자의 의무)** 폐기물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추출 폐기물 등으로부터 핵심 원자재의 잠재적 회수에 관한 예비 경제성 평가서(preliminary economic assessment study)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함

168) 광물안보파트너십은 미국 주도로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스웨덴, 영국, EU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도 2022년 6월부터 참여함. U.S. Department of State,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EDIA NOTE, June 14, 2022.

169) European Raw Materials Alliance: ERMA, Network, <https://erma.eu/network/>

170) 2010년부터 희토류 원소를 비롯한 일부 중요 소재의 가격이 급등하는 등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출범하였고, 동 회의는 일본, 미국, EU 3국 협력의 틀 안에서 중요 소재에 대한 정책, 연구개발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매년 개최되고 있음. METI(Japan), [https://www.meti.go.jp/english/press/2020/1111\\_001.html](https://www.meti.go.jp/english/press/2020/1111_001.html)



- **(영구자석의 재활용 제고 관련 제조업체 의무)** 영구자석이 포함된 제품 제조업자는 해당 자석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포함된 경우 당해 자석의 물질 유형에 대한 라벨을 부착할 것과 영구자석에 관한 라벨을 부착해야 하고, 일정 기준 영구자석 포함 제품의 경우 소비후 폐기물로부터의 회수된 물질의 비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영구자석의 재활용을 제고할 의무 등을 규정함
- **(인정제도)** 핵심 원자재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인증 제도를 개발하고 감독하는 회원국 정부나 단체는 자신들의 제도가 집행위원회에 의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음
- **(환경발자국 선언)** 핵심 원자재를 시장에 출시할 때 가장 중요한 영향 범주에 대한 당해 원자재의 환경발자국을 선언할 의무가 필요한 경우, 당해 특정 핵심 원자재에 대한 산정 및 검증 규칙을 채택할 수 있음
- **(평가 및 제언)** CRMA안에서는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핵심 원자재의 순환성 및 재활용성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채택 및 시행과 더불어 관련 제조업체에게 추출 폐기물의 회수 및 영구 자석 재활용 등을 통해 관련 핵심 원자재의 수급을 지원함으로써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제고할 수 있는 점에서 주목됨. 더불어 관련 제조업체에 대해 환경발자국 선언 의무의 부과 등을 통해 보다 낮은 환경발자국을 가진 핵심 원자재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기후 및 환경 목표에도 기여하는 대응조치를 도입하고 있음은 높이 평가됨. 따라서 향후 우리의 공급망 안정화법에서도 대상 원자재의 순환성과 재활용성을 위한 조치 그리고 환경발자국 선언 등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에도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조치 도입을 검토할 가치가 있어 보임

#### (4) 전망 및 대응

- **(전망)** EU 집행위원회가 공표한 CRMA안은 향후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및 이사회 간 3자 협의를 거쳐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의 표결을 통해 확정, 시행되는바, 그 과정에서 일부 개정이 이뤄질 수 있겠지만, SMEI규칙안과 달리 CRMA안에 대해서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로부터의 아직까지 알려진 중요한 이견은 없음

- 다만, EU 집행위원회의 CRMA안에서는 동 제23조상 기업의 리스크 대비와 관련한 의무를 “대기업”으로 규정하면서 그 직원 수가 500명 및 매출이 1억 5천만 유로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위험을 감사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는바, 이에 대한 유럽의회 개정안에서는 “대기업”의 기준을 직원 수가 1,500명 이상이고 매출이 20억 유로 이상인 기업으로 정의하여 집행위원회의 기존 제안에서 제시한 적용 대상 대기업의 기준을 크게 상향 조정하였음.<sup>171)</sup> 이는 중소기업들의 의무 이행에 따른 부담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됨. 이밖에 유럽의회 개정안에서는 재활용 기준을 명확히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음. 즉, 집행위원회의 CRMA안 제1조제2항에서는 2030년까지 각 대상 원자재에 대해 EU 전체 소비량의 15%를 재활용으로부터 총당할 것을 목표로 규정할 뿐 그 기준 시점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데, 유럽의회 개정안에서는 현재 기준 재활용 목표율임을 명시하고, 나아가 의회 협상대표인 Nicloa Beer는 2030년까지 각 대상 원자재의 최소 7.5%를 현재보다 더 많이 재활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할 것을 희망하여, 재활용 기준의 강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이 주목됨<sup>172)</sup>
- **(우리 정부의 대응)** CRMA안에 따르면 전략기술 제조 대기업에 대해 전략 원자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포함한 공급망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함. 이와 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그러한 공급망 감사를 수행할 역량은 물론 공급망 위기에 노출시 대응 역량 역시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우리의 관련 입법에서는 핵심 원자재 및 전략 원자재를 사용하는 제조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공급망 전 과정에 걸쳐 규모별로 피해 예상 범위를 산정하고 위험비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sup>173)</sup>
- **(우리 기업의 대응)** 금번 CRMA안에는 핵심 원자재와 관련 영구자석이 포함된 제품 제조업자에게 영구자석 라벨 부착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어 우리 기업은 생산하는 제품 내지 원자재가 동 규칙의 적용을 받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sup>174)</sup> 또한 각 회원국의 핵심 원자재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도입되는 인증 제도를 숙지하여 대응해야 할 것임. 또한 CRMA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과 달리 전략 원자재의 원산지 요건이나 현지 조달 요구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171) Koen Verhelst, EU raw materials law would oblige fewer companies to audit shortage risks under lawmaker's draft revision, mlex, 2023. 6. 16.

172) 상계 자료.

173) 조성훈, 전계 자료, 12-13쪽.

174) 권소담 등, EU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 주요 내용 및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bkl Legal Update, 2023 3. 21, 5쪽.

따라서 EU 역내 기업과 외국 기업간에 차별 대우를 하고 있지 않음. 그렇지만, 후속 입법과정에서 원산지 요건의 강화나 EU 공급망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sup>175)</sup>과 같은 다른 법안과 연계하여 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sup>176)</sup>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

175) CSDDD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 공급망 전반의 실사 의무를 수립하는 지침으로 아동 노동, 노동환경 등의 인권문제, 환경 오염 및 생물 다양성 보존 등의 환경 문제 식별 및 예방, 완화 조치 요구에 대해 규정.

176) 윤윙희, 전계 자료.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권소담 등, EU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 주요 내용 및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bkl Legal Update, 2023. 3. 21.
- 박가현 등, 주요국의 핵심광물 확보전략과 시사점, Trade Focus 2022년 32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2. 12.
- 오태현, 유럽 공급망 보호를 위한 단일시장간급조치(SMEI)의 주요 내용과 평가, KIEP 동향세미나, 2022. 10. 14.
- 조성훈, 유럽 핵심원자재법(CRMA)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6, No. 1, 2023.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23 Issue Report: 무역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주요 산업별 핵심원자재 공급망 취약성 분석, 2023. 4.
- 홍승진, 유럽연합의 법령 입안을 위한 공동 실무가이드(1), 법제 2007. 7.

### [해외문헌]

-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COM(2008) 499 final, Brussels, 2008. 11. 4.
- \_\_\_\_\_, COM(2020) 474 Final, Brussels, 2020. 9. 3.
- European Commission, COM(2021) 689 final, Brussels, 2021. 11. 12.
- \_\_\_\_\_, COM(2022) 2011 Final, Brussels, 2022. 5. 23.
- \_\_\_\_\_, COM(2022) 459 final. 2022/0278(COD), Brussels, 2022. 9. 19.
- \_\_\_\_\_, COM(2022) 461 final, 2022/0279 (COD), Brussels, 2022. 9. 19.
- \_\_\_\_\_, COM(2022) 462 final, 2022/0280 (COD), Brussels, 2022. 9. 19.
- \_\_\_\_\_, COM(2023) 160 final. 2023/0079 (COD), Brussels, 2023. 3. 16.
- \_\_\_\_\_,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 Experts workshop on the Single Market Emergency Instrument, 2023. 2. 10.

European Communities, OJ L 337, 1998. 12. 12.

European Union, OJ L20, 2022. 1. 31.

European Parliament, 2022/0278(CDO), 2023. 3. 10.

Koen Verhelst, EU raw materials law would oblige fewer companies to audit shortage risks under lawmaker's draft revision, mlex, 2023. 6. 16.

### [웹사이트]

국토일보,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Off-take Agreement(1); 장기구매계약(1), 2020. 7. 27.

윤웅희, EU의 핵심원자재법 살펴보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23. 4. 6.

산업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 <https://www.motie.go.kr/motie/py/sa/todayeconomyindexprice/todayEconomyIndexPri.jsp>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EIP) on raw materials,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ectors/raw-materials/eip\\_en](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ectors/raw-materials/eip_en)

\_\_\_\_\_, RMIS, <https://rmis.jrc.ec.europa.eu/about>

European Raw Materials Alliance: ERMA, Network, <https://erma.eu/network/>

János Allenbach-Ammann, EU member states critical of Single Market Emergency Instrument, EURACTIV.com, 2022. 9. 30, <https://www.euractiv.com/section/economy-jobs/news/eu-member-states-critical-of-single-market-emergency-instrument/>

KBA Europe, EU 이사회 법제실, 'EU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의 EU법 위반 가능성 지적, 2023. 4. 6.

METI, The 10th Trilateral EU-US-Japan Conference on Critical Materials Held, November 11, 2020, <https://www.meti.go.jp/>

U.S. Department of State,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EDIA NOTE, June 14, 2022, <https://www.state.gov/minerals-security-partnership/>



KLRI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 2023년 제5호  
**Global Legal Issue**

**EU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현황 및 시사점**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디지털 트레이드 포럼 위원장



발행일 2023. 9. 15. 발행인 한영수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15 한국법제연구원  
Tel. 044)861-0300 Fax. 044)868-9913

ISBN 979-11-92875-81-1(95360)

